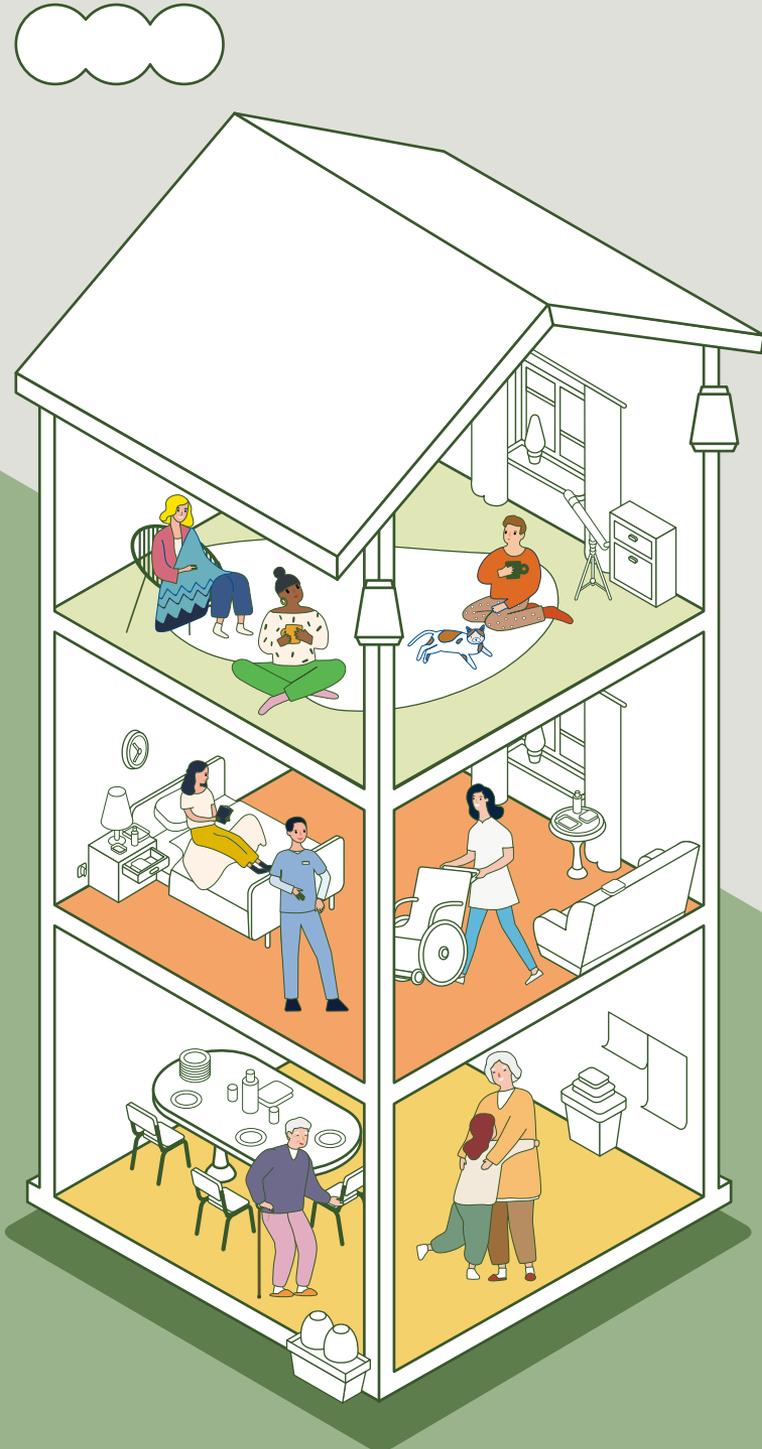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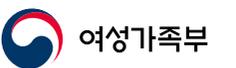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기획 매뉴얼

이주민, 양양보호사, 노인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기획 매뉴얼

이주민, 김영보, 윤사, 노인



I	III	IV	V
개요	대상별 강의 기획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 배경 및 목적 05 2. 활용 대상 05 3. 주요 내용 05 4. 활용 방법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주민 대상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목표 및 필요성 17 2) 교육대상의 특성 17 3) 강의 기획 포인트 27 4) 상황별 액션플랜 30 5) 관련 자료(토론거리 및 읽을거리) 33 2. 요양보호사 대상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목표 및 필요성 40 2) 교육대상의 특성 41 3) 강의 기획 포인트 44 4) 상황별 액션플랜 45 5) 관련 자료(토론거리 및 읽을거리)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렇게 사용하세요! 63 2)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63 2. 유의사항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런 점들에 유의하세요! 64 3. 공통 Q&A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 68 2. 이주민 대상 지원 기관 및 지원 정책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주민 대상 상담 및 신고 센터 73 2) 이주민 대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 75 3. 요양보호사 대상 지원 기관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양보호사 대상 상담 및 신고 센터 76 4. 노인 대상 지원 기관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 대상 상담 및 신고 센터 76 5. 기타 참고용 자료 77 6. 참고 자료 81
II			
<p>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이해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진 체계 08 2) 추진 현황 08 2.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와 교육 방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10 2)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의 방향 13 			

개요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 기획 매뉴얼’이란?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 기획 매뉴얼’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현장에서 전문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의 기획 요령 및 교육 대상별 특화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은 교육의 호감도를 높여 시민 스스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 제작 배경 및 목적

-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의 양적 확장¹⁾ 과 더불어 교육 품질 제고 및 대상 맞춤형 강의 기획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의 의미를 기반으로, 대상 맞춤형 교육 기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 ➔ **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대상 맞춤형 강의 기획 시 강사가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대상별 특성, 교육 특화 내용 등을 선별하여 가이드 형태로 구성**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대상 중 교육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충분한 자료가 없거나 대상에 대해 부정확한 배경 지식을 가지기 쉬운 대상을 선별하여 해당 대상의 특성 및 맞춤형 교육 내용을 정리·제공함으로써 강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향후 교육생 만족도 제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 체감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한다.
- ➔ **노인/ 요양보호사/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교육의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교육대상을 선별하여 제작**

2. 활용 대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파견 강사
-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담당자, 폭력예방교육 기획 담당자 등

3. 주요 내용

-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목표 설정의 예시 및 교육의 필요성
- 교육대상별 다양한 삶의 조건
- 교육대상별 강의 기획의 주요 포인트 및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
- 지역사회 사건, 사고 관련 신문기사 등 읽을거리 및 토론거리

1) p.8-9 참고

4. 활용 방법

-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 기획 매뉴얼’은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기획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본 매뉴얼은 대상 맞춤형 강의 기획을 위한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타 교육대상을 위한 맞춤형 강의 기획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매뉴얼의 활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본 매뉴얼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목표’ 설정의 예시 및 ‘교육의 필요성’이 소개되어 있다. 강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대상 맞춤형 교육 기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강의 기획의 단계에서 각 대상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교육대상의 특성’ 부분에서는 교육대상별 다양한 삶의 조건, 사회적 위치 등을 확인함으로써 교육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가 구성되어야 함을 인지한다.
- ‘대상별 강의 기획 포인트’는 강사가 대상 맞춤형 강의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는 교육대상에 적합한 특화 내용 중심의 강의를 구성할 수 있다.
- ‘상황별 액션플랜’에서는 각 교육대상이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혹은 위험 상황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강사는 강의 현장에서 교육대상별 맞춤형 액션플랜 등을 제공함으로써 폭력 예방이 개개인의 일상적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주지시킬 수 있다.
- ‘관련 자료(토론거리 및 읽을거리)’는 강사가 교육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지역사회 사건, 사고 및 강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문기사 등을 수록하고 있다. 강사는 제시된 ‘사례 토론 이슈’를 참고하여 강의 중 질문을 던지거나 토론을 유도할 수도 있다. 교육대상은 해당 기사문을 접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폭력 예방의 실천 사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 특히 강사는 강의 중 기사문을 활용할 때 최대한 시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사 및 토론거리 선정에 있어 대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이해

I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일반 국민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두고 지역 안전 파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하여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다.

관련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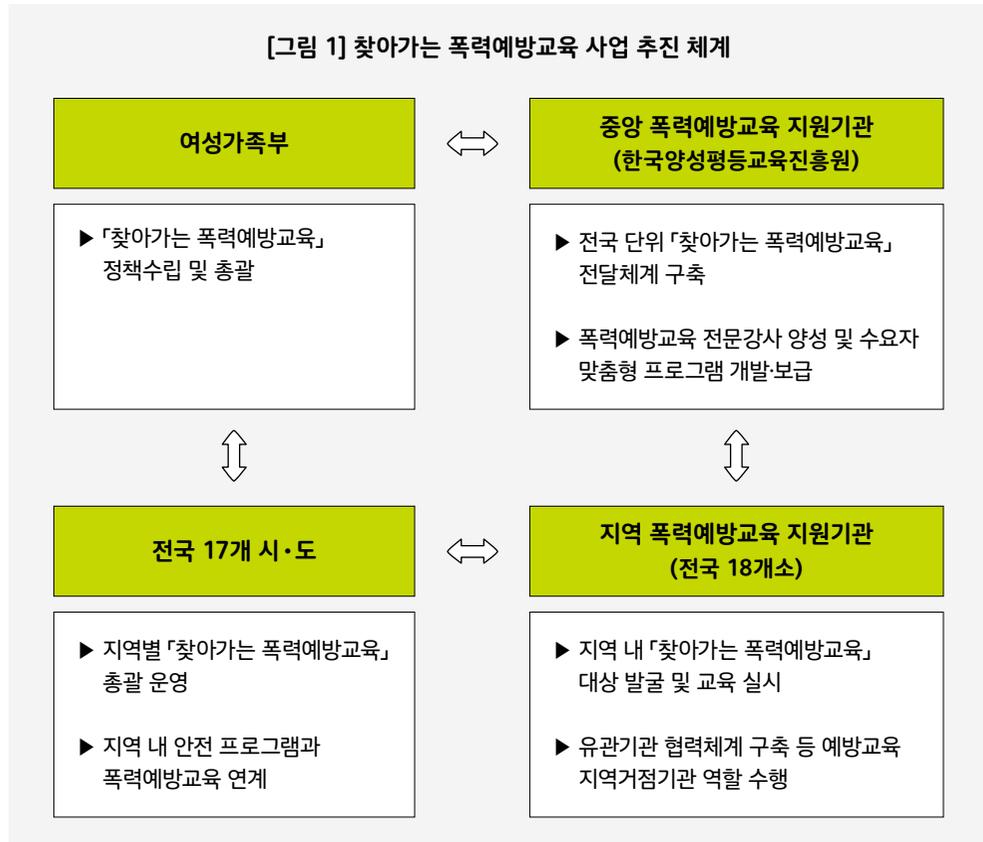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이해

1 추진 체계

○ 여성가족부, 전국 17개 시·도,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전국 권역별 18개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그림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추진 체계



2 추진 현황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대상인 일반 시민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폭력예방 파수꾼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지역 구성원 등 주요 교육대상을 발굴·확대하였다.

일반 국민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원 확대 : '14년도 2,604회 → '15년도 3,851회 → '16년도 3,903회 → '17년도 5,458회 → '18년도 5,363회 → '19년도 5,489회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교육 확대: '16년 51회 → '19년 267.5회

[그림 2]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물



○ 대상별 맞춤형 교육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 참여자가 지역 곳곳에서 안전 파수꾼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주요 교육대상

- 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구성원(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운송업계 종사자 등)
- ②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대상(도서 벽지·농산어촌 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 ③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자(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등)

2.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와 교육 방향

1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란?

젠더기반 폭력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에 대한 관념 틀인 젠더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언어적 통제와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불법 촬영, 조혼, 인신매매, 여아 낙태, 할례(성감대 절단), 명예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젠더 폭력 혹은 젠더기반 폭력(GBV: Gender -Based Violence)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젠더'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별 정체성, 성 역할 등 성에 대한 관념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생물학적 성(sex)에 따른 성별 특질이 있다고 여기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역할, 지위 등이 다르게 사회화된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인 체계는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이는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로 나타난다. 이에 성별 정체성이나 역할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재구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젠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젠더기반 폭력은 연령, 계급, 국가, 인종을 넘어 보편적으로 발생하며 젠더와 교차적으로 발생한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란 '모든 젠더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며 그들이 겪는 억압과 차별 또한 모두 다르다'는 관점이다. 모든 사람은 성별 정체성과 함께 종교, 성적 지향,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마다 차별과 억압에 대한 경험이 다를 수 있으며, 동일 성별 내에서도 젠더기반 폭력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²⁾

젠더기반 폭력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젠더화된 사회 구조의 맥락에서 비롯된다. 젠더에 따른 차별과 혐오는 젠더기반 폭력을 발생시키므로 이 문제를 해결

2) 변신원 외.(2017). 『폭력예방 기본교재1: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미발행).

3) 여성가족부.(2016). "2016 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2017 전문강사 재위촉보수 및 젠더(여성)폭력예방교육 통합기본과정", p.7 참고하여 재구성

하기 위해서는 젠더기반 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뿐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불평등 제거를 통해 사회 구조 변화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젠더기반 폭력의 유형³⁾

[표 1] 젠더기반 폭력의 유형

피해 유형	내용
강간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 삽입)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
강간 미수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나의 뜻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키스, 성기 접촉, 애무 등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상대방이 고의로 나의 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 행위
성희롱	업무와 관련된 지위·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고용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PC,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 등	PC, 휴대폰, 일반 전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으로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받은 행위(단,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문자, 메일 제외)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데이트 폭력	연인 간에 발생하는 통제, 학대, 억압적 행동,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혹은 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이성애 관계뿐 아니라 동성애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성매매	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성적 착취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위계·위력 등을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유인하는 행위 포함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인 가정구성원 간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폭력 행위

국제사회에서는 젠더기반 폭력(GBV : Gender-Based Violence)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 (VAW: Violence Against Wom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⁴⁾는 2017년 제35번 일반 권고를 통해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즉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여성폭력'을 개별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생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⁵⁾ 젠더기반 폭력이 체계 및 장애, 국적, 인종, 성적 지향 등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개념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지역별 폭력 추정: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비파트너 성폭력의 유병률 및 건강 영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여성의 약 30%가 겪는 가장 흔한 폭력 유형이 그들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 중 38%가 파트너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러나 실제 피해는 밝혀진 수치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 이유는 남편 또는 연인은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로 이들의 가해 행동과 사적 친밀성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또 지속해서 반복되는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공포감과 무력감을 내면화시켜 신고를 포기하도록 만든다. 이 외에도 폭력의 관성화, 피해자 유발론, 가해자 동정론 등의 잘못된 통념과 2차 피해의 두려움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젠더기반 폭력의 특징 및 시사점을 공간, 관계, 시간, 구조라는 범주로 나누어 정리⁷⁾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젠더기반 폭력의 특성 및 시사점

범주	특성	시사점
공간 공통의 사적 공간을 점유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가정, 학교, 학원, 직장 등 일상의 공간으로 공통의 사적 공간을 점유	▶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관계 사적 친밀성의 관계와 혼동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더하여 낭만적 사랑, 성애, 가족애, 친밀감, 가족이나 조직에 대한 결속력 등 정서를 기반으로 한 관계 안에서 발생	▶ 폭력성과 친밀함을 구분하기 어려움 ▶ 가해를 사랑으로,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부적절한 예민함으로 보는 관행을 개선해야 함 ▶ 피해자 인권보다 관계의 유지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개선하여야 함
시간 지속, 반복, 점진	공간과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 점진적으로 지속됨	▶ 장기화된 폭력 속에서 피해자의 무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 ▶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인식

범주	특성	시사점
구조 젠더화된 사회 구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차이를 반영	▶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폭력으로 혐오 범죄,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스토킹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관리 취약 ▶ 젠더기반 폭력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구성하여야 함

현행법상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처벌과 보호, 구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새롭게 가시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불법 촬영, 혐오 범죄 등은 아직 법·제도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사회 변화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기반 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2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의 방향

▶ 젠더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방향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여성과 남성 간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성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일컫는 포괄적 용어다.⁸⁾ 이는 힘의 차이로 인한 권력 관계와 성별 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며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의식, 잘못된 성편견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은 성차별 및 자원의 불평등 분배 등 차별적 구조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폭력을 공공의 문제로 새롭게 받아들이게 해 시민 개개인의 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

- 4) CEDAW.(2017).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o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 5) 변신원 외.(2017). 「폭력예방 기본교재1: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미발행).
- 6) WHO(2013.6.20.). Violence against women: a 'global health problem of epidemic proportions' https://www.who.int/mediacentre/news/releases/2013/violence_against_women_20130620/en/
- 7) 변신원 외.(2017). 「폭력예방 기본교재1: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미발행).
- 8) 김양희.(2013).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이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평등 관점에서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일상 속에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젠더기반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인식 등을 보다 성평등한 문화를 바탕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피해자 관점에서 폭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폭력예방교육 강사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의식이 어떻게 폭력으로 표현되고 작동하는지를 교육생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 대상에게 적합한 사례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젠더기반 폭력을 인지할 수 있는 민감성을 높이고,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스스로 실천 가능한 사례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즉, 젠더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의 효용성은 '교육을 통해 행동화가 가능한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후 각 공동체의 대응력이 강화되었는가'를 의미한다.⁹⁾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접근과 초점

일반 시민 대상 젠더기반 폭력 예방교육의 핵심을 4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기반 폭력은 분명한 사회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젠더기반 폭력이 개인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이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 확산되어야 한다. 감정에 호소하여 개인적 변화만을 강조하는 등의 교훈적 내용으로는 반복되는 젠더기반 폭력의 본질적인 특성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폭력예방 교육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데, 교육 시간이 약 1시간 내외로 비교적 짧은 물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성별 권력관계 등의 개념적 용어를 더욱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성평등에 기반하여,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성범죄(아동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등)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온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의 관성을 깨야 한다. 이는 피해자 유발론, 2차 피해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애정, 친밀감 등을 이유로 반복되는 지배와 통제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트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6.6%¹⁰⁾로 높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2017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 및 젠더(여성)폭력예방교육 통합기본과정」.

10) 헤럴드경제(2018.03.27.), 데이트폭력, 높은 재범률... 한 달에 7명 사망하는 끔찍한 현실.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3271054574080784_1

고 가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단 대학생 연령대뿐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에서도 신종 성범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법적으로 명문화된 성범죄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상대적으로 사적 관계의 문제로 간과되고 은폐되기 쉽기에 이에 대한 민감성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젠더기반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체자, 조력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젠더기반 폭력예방은 결국 안전한 지역사회,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선결과제를 교육에서 강조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젠더기반 폭력예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할 동기를 얻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참여형 교육의 확대이다. 지역, 연령, 성별, 교육 요구의 차이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활용, 참여형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젠더기반 폭력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가해자-피해자 구도에서 벗어난 일반 시민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의 초점이 옮겨 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폭력예방교육 강의 기획 매뉴얼은 위의 4가지 중점 사항을 담아 폭력예방교육의 대상별 특성과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의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강의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저항감 없이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대상별 강의 기획 가이드라인

Ⅱ

1. 이주민 대상
2. 요양보호사 대상
3. 노인 대상

1. 이주민 대상

1 교육목표 및 필요성

교육목표

- 젠더기반 폭력 개념을 이해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다.
- 성폭력·가정폭력의 개념, 사건 발생 시 예방 및 대처방안을 이해하여 폭력예방의 적극적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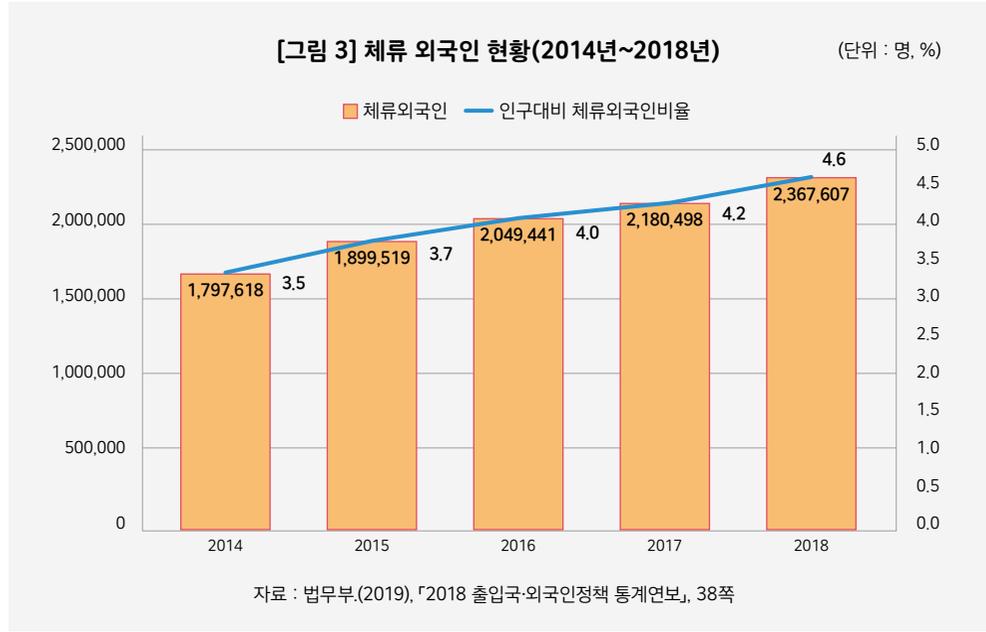
교육 필요성

- 국가 간 인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 이주민 또한 가정, 일터, 학교 등 일상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 한국 사회 내 사회적 약자로 적극적인 폭력예방과 보호가 필요하다.
- 이주민 피해자는 기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체류 불안정 등의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이주민의 경우 한국 문화를 잘못 인식하여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젠더기반 폭력 개념의 이해는 이주민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향상시켜 성평등한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성폭력·가정폭력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또한 폭력의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피해자 보호 지원 서비스를 이해하여 사건 처리 과정 시 차별을 받지 않고 피해자 관점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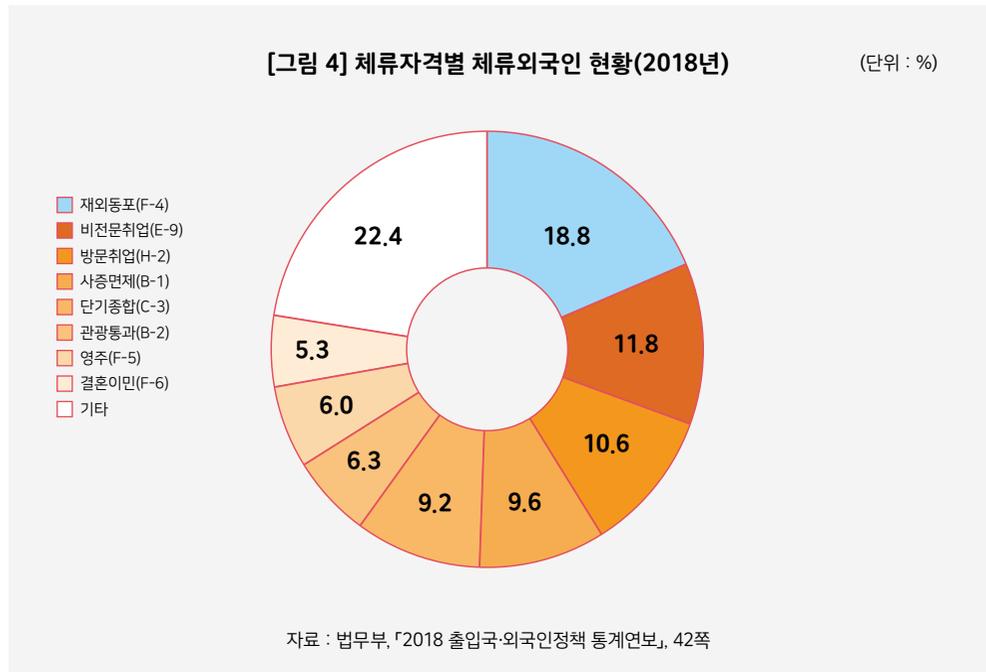
2 교육대상의 특성

이주민 현황 및 특성

-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36만7607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외국인들은 결혼이민, 이주노동, 외국국적동포,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 18.8%, 비전문취업(E-9) 11.8%, 방문취업(H-2) 10.6%, 사증면제(B-1) 9.6%, 단기총합(C-3) 9.2%, 관광통과(B-2) 6.3%, 영주(F-5) 6.0%, 결혼이민(F-6) 5.3% 등의 순이었다.



▶ 결혼이주민(결혼이민자·귀화자)

- 2002년 이후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주민은 2014년 국제결혼 건전화에 위한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으로 인해 최근 증가율이 감소하였다.¹¹⁾
- 2017년 말 기준 결혼이주민은 33만188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147만9247명) 중 22.3%였다. 결혼이주민 주민 중 여성 비율은 2013년 83.9%에서 2017년 80.3%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다수가 여성이었다.
- 1990년대까지는 일본인이 다수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 결혼이주민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 말 기준 결혼이주민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한국계) 34.6%, 중국 20.4%, 베트남 21.1%, 필리핀 5.7%, 일본 3.7% 등의 순이었다.
- 결혼이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전통적 성 역할에 과도하게 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¹²⁾ 그러므로 결혼이주민 가정의 성 역할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4개 문항을 중심으로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을 살펴보면, 가장 동의도가 높은 항목은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이며 그 다음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 분업모델인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돌봄자'보다 '이인 소득자 - 이인 돌봄자' 모델에 동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항목별 성별 차이도 존재하여, 남성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남성 = 생계부양자' 문항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자녀돌봄자=여성' 문항에서는 성별 인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남녀 모두에게서 육아에 대해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¹³⁾

11) 법무부.(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12) 오마이뉴스(2019.08.04.), 돈 주고 아내 사세요?... 이주여성 '물건' 취급하는 광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002&CMP_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13)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371쪽

[표 3] 배우자 및 결혼이주민(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성 역할 인식) 등의 비율 (단위 : %)

구분	결혼이민자·귀화자	배우자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역코딩)	57.4	71.9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88.7	83.5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역코딩)	72.5	76.4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87.8	85.8

자료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372쪽 / 주 : 동의 비율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결혼이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5%, 고용률은 66.4%,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민 3명 중 2명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민 일반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3.9%p, 3.3%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결혼이주민(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2018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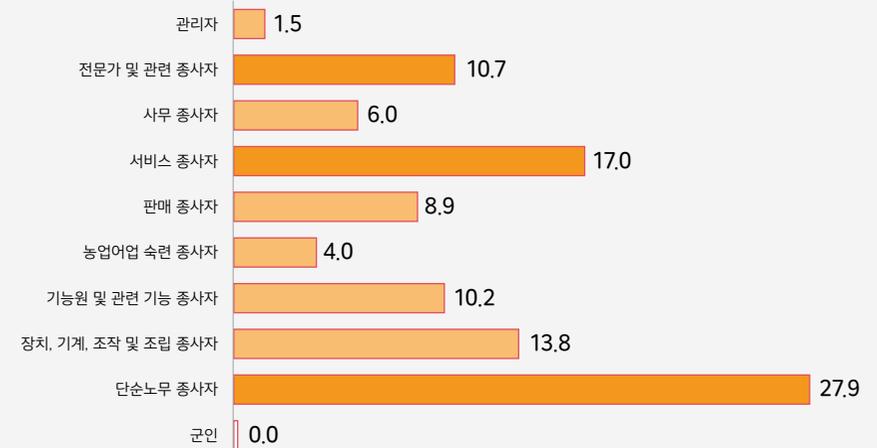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17쪽

○ 취업한 결혼이주민은 단순노무 종사자 27.9%, 서비스 종사자 17.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¹⁵⁾

○ 18세 이상 국민 일반과 비교하면 결혼이주민의 상용직 비중은 현저히 낮고 임시직, 일용직 비중은 훨씬 높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은 현저히 낮은 등 전반적으로 종사상 지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¹⁶⁾

[그림 6] 결혼이주(결혼이민자·귀화자) 취업자의 직종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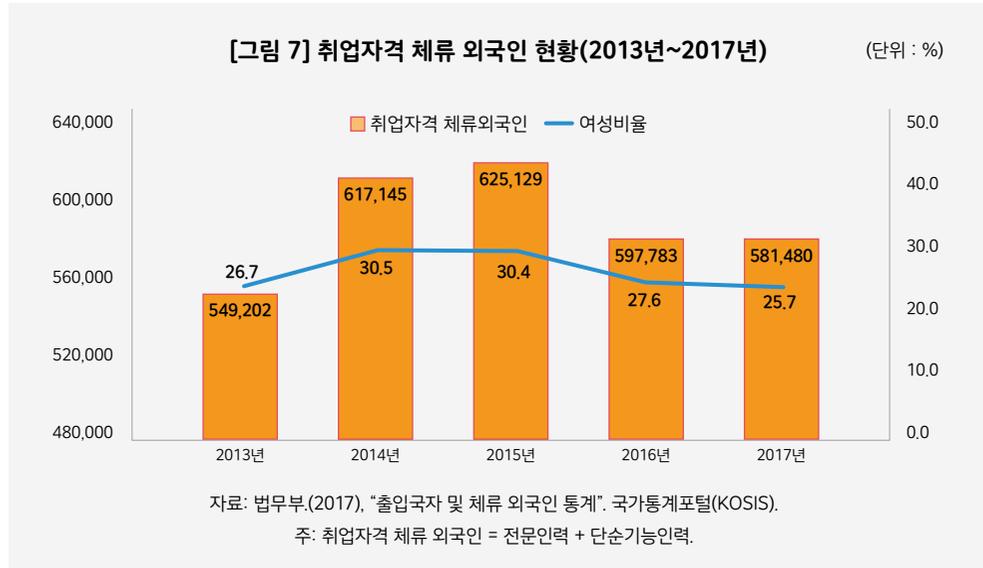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17쪽

이주노동자

○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인 전문인력과 단순 기능인력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문인력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행행(E-6), 특정활동(E-7)을 하는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단순 기능인력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을 포함하고 있고,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으로 이주한 노동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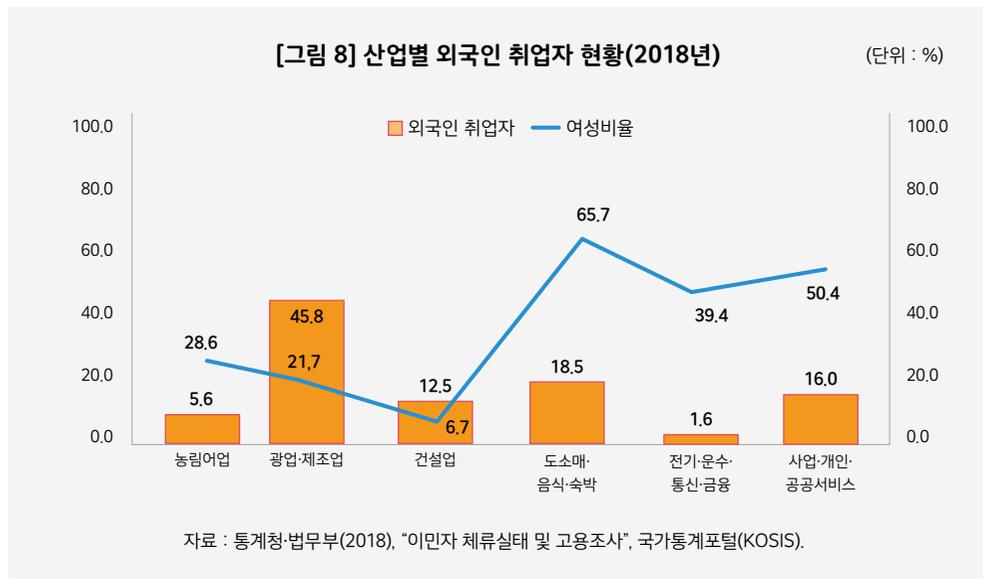
○ 2017년 말 기준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58만1480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218만498명) 중 26.7%였고, 이중 여성 비율은 25.7%로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의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으며, 2013년 26.7%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15)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23쪽
 16)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31쪽



○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은 23만8880명이고, 남성 14만651명, 여성 9만8229명으로 여성 비율이 41.1%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E-9)과 비교하면 방문취업비자(H-2)는 식당에서 서비스직까지 취업 범위가 다양하므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17)

○ 2018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8만4300명이고 남성 59만300명, 여성 29만3900명으로 여성 비율이 33.2%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제조업 45.8%, 도소매·음식·숙박 18.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6.0%, 건설업 12.5% 등의 순이었다. 여성 비율은 도소매·음식·숙박이 6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50.4%, 전기·운수·통신·금융 39.4%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 현황 및 특성 18)

○ 실질적으로 국내 전체 이주민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이주민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각 실태조사별 폭력의 정의와 범위, 조사대상이 모두 제각각이고 소규모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략적인 이주민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양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이주여성의 성폭력 경험률은 대체로 예술행행, 농업, 제조업 종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는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가 다수였다. 또한, 2015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동료 이주노동자(동국적+제3국적)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어 이주노동자 대상 예방교육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이주여성 관련 성폭력 실태 조사 비교(중복응답)

(단위: %)

대상	가해자	주된 유형
외국인 근로자 전반 ¹⁾	한국인(사장, 동료) = 10.7%	강간,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경기도 이주 여성 근로자 ²⁾	① 외국인(51.3%) = 동국적(25.3%)+제3국적(26.0%) ② 한국인(49.0%)	① 성적 농담 ② 유혹형 ③ 성행위 시도
제조업분야 이주 여성 ³⁾	① 사용자나 관리자(15.6%) ② 동료 한국인 노동자(15.6%) ③ 동료 이주노동자(11.1%)	① 성적 농담 ② 술 권유, 술 따르기 강요 ③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농업분야 이주 여성 ⁴⁾	① 한국인 고용주/관리자(64.0%) ② 동료 이주노동자(20.0%) = 동국적(8.0%)+제3국적(12.0%)	① 성적 농담 ②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예술행행비자 이주민 ⁵⁾	① 근무지 고용주 (52.4%) ② 프로모션 관리자(26.8%) ③ 손님 (30.5%)	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② 성적 농담 ③ 가슴 등 성적 신체 부위 만짐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이주여성의 '외출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2018.03.21.).

주: 1) 한국외국인지원센터·이주민방송 MNTV 등.(201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2) 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5).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3) 국가인권위원회.(2016).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5) 국가인권위.(2014). "예술행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6) 동 조사에서는 성희롱의 개념을 성행위 시도형, 위협형, 뇌물형, 사회문화형, 유혹형으로 구분. '원하지 않는 유혹적 행동(데이트 신청 등)나 사생활침해(계속 전화 등)'도 유혹형으로 넓게 포함.

17) 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18(KOSIS).

18) 법무부 보도자료(2018.03.21.), "이주여성의 '외출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여성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료집(2018.10.1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8.03.26.),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8.06.20.),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연장 기한 평균 22.8개월"을 참고하여 작성함.

○ 하지만 2016년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담 센터로 들어오는 성폭력 상담사례는 5.0%가 채 안 되는 낮은 비율¹⁹⁾이었다. 이처럼 실태조사 등에서 확인되는 성폭력 피해 경험에 비해 낮은 성폭력 상담 통계는 실제 성폭력 피해를 보는 이주여성들이 기존의 상담 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업주로부터 제공된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작업장에서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에서도 안전이 요구된다. 하지만 숙소가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남녀 숙소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많은 주거 공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 🔊 캄보디아에서 온 농업노동자 6명은 고용주로부터 방 두 개짜리 숙소를 제공받았다. 방 하는 남성 노동자 1명이 쓰고, 나머지 하나를 여성 노동자 5명이 함께 써야 해서 고용주에게 방이 너무 좁다고 했더니 2명은 남성 노동자와 같은 방을 쓰라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물으니 “같은 나라 사람인데 무슨 문제냐”고 하였다.
- 🔊 한국 남자들이 “애인하자”, “사귀자”고 치근덕거리기도 하고, 심할 때는 몸을 툭툭 치거나 만지기도 해요. 외국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특히 혼자 생활하고 있으니까 쉽게 보고 “외로우니까 사귀자”고 치근덕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 🔊 휴게 시간에 내 앞에서 야동을 보고 시시덕거리며 음탕한 눈길로 쳐다봐서 기분 나쁜 적도 있었고, 옷 단추를 열고 “아가씨”하고 불러 불쾌하고 민망스러운 적도 있었어요.
- 🔊 성폭력 당한 경우라면 신고방법과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사소한 성희롱은 그랬다가 문제만 더 커지게 될 것 같아서요. 내가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료: 국가인권위(2018.03.22.),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에 대한 권고”.

○ 이주여성은 성폭력 경험 시 한국어 실력 미흡, 정보 부족, 체류자격 불안(신고)의 두려움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부분은 한국 여성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유들로 한국 여성과 이주여성 간 가장 분명한 차이가 나는 영역이다. 즉,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더하여 체류자격 불안, 저개발국 출신에 대한 차별, 국제 결혼 광고 등에 의한 성적 대상화 등 이주여성 경험의 특성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 대부분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없어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해 한국이나 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의 23.8%에 불과했으며, 76.2%는 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²⁰⁾ 기존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교육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장님이 몸을 건드리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 2019년 7월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꼴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²¹⁾ 또 10명 가운데 약 7명은 성적 학대를, 8명은 심리 언

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3.3%나 됐다.

[표 5]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항목		사례수	백분율	항목		사례수	백분율
심리·언어적 학대	심한 욕설	314	81.1	활동 자유 구속	감금	46	11.9
	부모님과 모국 모욕	102	26.4		외출 방해	99	25.6
신체적 학대	폭력 위협	147	38.0		신분증 갈취	64	16.5
	흥기 위협	77	19.9		한국어 교육 방해	69	17.8
성적 학대	성행위 강요	108	27.9	고국과의 단절 강요	본국 식구와 단절	66	17.1
	성적 수치심	95	24.5		본국 방문 방해	104	26.9
	성추행, 강간	60	15.5		본국 송금 방해	104	26.9
건강상 불이익	낙태 강요	46	11.9	경제적 학대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안 줌	129	33.3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77	19.9		수입을 남편 등이 빼앗아 감	60	15.5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160	41.3		과도한 휴대폰 요금을 지불시킴	63	16.3
					과도한 집안일을 시킴	106	27.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8.06.20.),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연장 기한 평균 22.8개월”

○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들 중 140명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35명)’,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29명)’,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29명)’ 등을 꼽았다.

- 📁 19, 2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16). “2016 이주 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참고.
- 📁 21) 한겨레신문(2019.07.07.),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가정폭력… 반복되는 피해 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797.html#csidx8f7a583363c31168034936ea760e137

- 선주민²²⁾ 처럼 이주민 또한 성폭력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터부시하고 2차 피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초청으로 입국한 가족(이주민의 어머니, 친자매, 중도 입국 자녀 등) 대상 성폭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강의 진행 TIPS

- 🔊 이주민은 다른 국가에서 이주하였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 체제를 경험하였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간혹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선주민과 다른 경험을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강의를 준비해야 하며, 선주민 대상 교육과는 다른 주의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발언 중 인종, 문화 등 차별적인 발언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 이주민 대상 수업의 경우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면 대상자의 이해도가 빠를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쉬운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 🔊 이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로 국가별 문화적 특징, 금기시되는 행동을 숙지하는 등 대상자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언어로 인사를 한다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다.
- 🔊 본 강의를 통해 이주민의 다른 국가 및 문화권에 대한 편견을 만들거나 기존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정 국가 및 문화권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은 지양하도록 한다.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사례를 소개할 경우 주의하도록 한다.
- 🔊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은 거주 기간이 길다고 해도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있으며, 통역을 통해 강의를 진행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강의 시 천천히, 간단히 말하고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등 교육대상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한다.
- 🔊 이주민은 자녀 양육 및 근로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참여해도 강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본 강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례 중심의 강의로 체감도를 높인다.

- 📄 22) "인종차별을 이야기할 때 '원주민'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는 97%가 한국인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맞지 않는다. 한국의 이주운동에서는 한국인 대신에 '선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한국인을 강조하면 한국인 대 외국인의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선주민/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쓴다."
여성신문(2017.10.11.), [여성운동 30년, 용기와 연대의 기록] ④ 이주여성, 우리의 이웃이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26>
- 📄 23) 체류 외국인이 성폭력 범죄 등 이유로 고소하여 경찰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체류 상대에 상관없이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허용(「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



3 강의 기획 포인트

▶ 한국어 수준 및 한국 문화 이해 정도에 따른 이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 기존의 많은 이주민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소통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이 필수적이므로 많은 이주민이 한국어 강좌를 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은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출신 국가의 언어로 교육하지 않는 한 교육대상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강의의 구성 범위와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
- 대상 이주민의 출신 국가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을 터부시하여 정부 및 시민 사회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가 없거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한국과 달리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개념 및 처벌이 법제화되지 않았거나 그 수준이 다르기도 하다. 이처럼 출신 국가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개념을 다르게 인식했거나 인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대상을 이해시켜야 한다. 즉, 선주민과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강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입국 초기의 결혼이주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소 낮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개념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단계가 필요하고, 통역을 동반한 강의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빠르고 쉬운 이해를 위해서 개념을 단순화하여 설명하거나 사진과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이주민의 사례를 활용하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 한국에서 거주한 지 3~5년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 초기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 내 출신 국가 이주민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초기 이주민은 이들을 통해 정착을 위한 정보와 도움을 얻기도 한다.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민은 경찰 및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출신 국가의 지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한 정보는 선주민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보다 더 수용도가 높을 수 있다.
-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자 보호 정책 등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가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다른 이주민 및 공동체에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 이주민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체류의 불안정성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류를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안내가 필요하다.²³⁾

▶ 이주 배경에 따른 이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에게는 결혼이민, 이주노동, 외국 국적 동포, 유학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이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이주민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고, '결혼'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이주민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서는 특히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대상에 집중하고자 한다.
- 결혼이주민은 혼인을 매개로 이주한 정주형 이주이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각종 사회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에 의존하기 쉬워 구조적인 문제의 중첩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발생하기 쉽다. 선주민의 가정폭력과 달리 성적 및 경제적 학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가정에서의 성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성폭력 사건은 남편을 포함한 남편의 친족이나 지인(시부, 시형제, 시가 친척, 이웃 주민) 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는 결혼이주여성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초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어머니, 자매, 중도 입국 자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²⁴⁾ 한편 결혼이주민의 많은 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노출되기도 한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미등록 체류자도 가능) 및 동반 아동은 전국 28개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에서 일시적 보호, 의료·법률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전화: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이주노동자는 특정 체류 허용 기간 중 특정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입국 전후 취업교육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배울 기회가 있지만, 행정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많지 않다. 시민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어 교육 및 법률 지원을 받거나 일부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 많은 시간을 사업장에서 보내고 사업체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사업장 변경 사유가 매우 협소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다.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규정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한 달 평균 2일 미만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24) 오마이뉴스(2018.03.20.), 성폭행 당하는데 망보던 사돈... 이주여성들의 #미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3059

- 일터에서 사업주, 선주민 상사 및 동료, 외국인 강사 및 동료, 본국 출신 노동자 등에 의해 성폭력 및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 성별 구분이 없거나 잠금장치가 없는 등 안전하지 않은 숙소, 사업장 이동 변경 과정에서 안정적인 거처 없음, 숙소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식당에서 취침 등 성폭력 위험이 많은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예술홍행(E-6) 이주노동자의 성 착취 인신매매 문제는 수년 동안 제기되고 왔고, 최근 사증면제(B-1)와 같은 비공식적 이주 경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성 착취 인신매매²⁵⁾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 최근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숙박을 해결하는 개인 생활공간에서 집주인, 숙박업소 주인, 기숙사 관리인 등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연인 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하기도 한다.
- 이주민 피해자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가해자로부터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신원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체류 자격 불안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문제 삼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국가의 출신 이주민이라면 피해 사실이 본국 혹은 출신 국가 공동체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상담을 꺼리기도 한다. 이주민의 일부는 한국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며 신체 접촉이 쉽게 허용된다고 여기는 등의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성폭력 및 성매매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 이주 배경별로 생활 경험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강의 구성이 필요하다. 예방교육 실시 전 협의를 통해 세부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은 한국어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선주민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강의 방법이 필요하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신고 방법 및 지원 서비스를 설명하여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합법적 체류 조건과 무관하게 체류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25) 국민일보(2019.08.31.),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시켜줄게" 속여 브라질여성들 성매매시킨 일당 구속.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61216&code=61121111&cp=nv>

▶ 선주민 포함 폭력예방교육

- 결혼이주민 대상 교육 시 배우자 및 선주민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 시 선주민 사업주 및 직장 동료도 포함해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를 열린 태도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감수성을 강조한다.
- 선주민의 경우 본인의 그릇된 언행으로 인해 이주민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도록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필요성을 안내한다. 이주민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한다.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의무자이며 고용주로서 성폭력 가해자가 될 경우, 고용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되었음을 알려 준다.

4 상황별 액션플랜

! 예방을 위하여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게 해 이주민 스스로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정보를 습득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출신 국가 공동체 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사건발생시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아동, 유학생, 관광객 등 이주민이 선주민 및 이주민에 의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 신고 결정 여부를 떠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지원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일상적인 한국어어를 잘하더라도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주민 대상 신고 기관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 발생 후 72시간 이내일 경우 응급

진료를 포함한 긴급 상담이 진행되고, 피해 발생 후 72시간 이후인 경우 수사 절차 등 일반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안내한다.

<상담 및 신고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인력 지원센터 1644-0644 	<p style="text-align: center;">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p> <p>2019년 현재 대구, 전남, 인천, 충북 각 지역별 1개, 총 4개 상담소 운영 중</p>
--	--

※ 자세한 신고 및 상담 기관은 부록 참조

!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

- 신고 이후 지원기관 및 수사기관의 전문가로부터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관련 지원 정보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정보를 파악하여 피해자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이주민의 경우 선주민과 달리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미등록 이주민)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역시 추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통보 의무 면제 공무원 확대,²⁶⁾ 성폭력 피해자 체류 허용과 같은 이주민 피해자의 체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이를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 때문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원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상담·의료·수사·법률 등 피해자 초기지원,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보호 시설 이용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26)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외국인이 범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의 신분을 출입국 등에 통보하지 않는 것” 뉴스1(2019.07.25.), 삼척 전복사고 이후 사라진 태국 노동자들, 조속히 의료기관 찾아야. <http://news1.kr/articles/?367881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

1.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이주여성 보호시설 연계 및 생계 지원 등

2. 법무부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
- ▶예술은행(E-6) 종사자에 대한 사업장 점검·계도 강화 및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활용한 피해자 식별 및 피해자 회복 지원

※ 자세한 신고 및 상담 기관은 부록 참조

자료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이주 여성 성폭력 대응 가이드」.

2) 법무부 보도자료(2018.03.21.), "이주 여성의 '외칠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 주변인의 역할

- 이주민 피해자는 본국과 출신 국가 공동체 내의 부정적 소문이 두려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주변인들에 의해 2차 피해를 보기도 한다.
- 제3자(주변인)는 사건에 대한 소문 퍼뜨리기,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자 및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5 관련 자료(토론거리 및 읽을거리)

토론 사례

결혼이주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사례

①

한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지속해서 강제적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남편은 여성이 생리 중이거나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성관계를 강요했다. 여성은 남편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혼할 경우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참아야만 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상담을 받았고 지원기관의 도움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증거에 한계가 있어 합의 이혼을 선택하였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8). 「이주 여성들의 #Me Too」 자료집.

토론 사례

결혼이주인 친족 성폭력 피해 사례

②

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가족들을 한국에 초대하였다. 결혼식 4일 전 결혼이주여성의 여동생은 형부가 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한국인 '형부'는 결혼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아온 필리핀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14일을 선고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에 따라 체류 허가를 받아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았다.

자료: 1) 여성신문(2018.3.18.), 제주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 항소심서 '7년 형'... 공대위 "환영"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2>

2) 법무부 보도자료(2018.03.21.), "이주여성의 '외칠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사례 토론 이슈>

- ➡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특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 선주민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이와 같은 피해자가 주위에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 결혼이주여성은 어떤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토론 사례 ③

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사례 ①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한 이주여성 노동자는 일도 한국말로 서툴렀고 주변 지역이나 장소도 잘 알지 못한 상태였다. 사장이 데려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여성은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고, 너무나 억울했지만 참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장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하였고 더는 견딜 수 없어 사촌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촌 언니의 도움으로 이주민 쉼터에 입소하여 법률지원을 받게 되었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8), 「이주 여성들의 #Me Too」 자료집.

토론 사례 ④

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사례 ②

태국인은 한국에서 사증면제로 90일간 단기 체류가 가능해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3개월만 마사지 일을 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한국에이전시와 태국 에이전시의 말만 믿고 태국 여성들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위치도 정확히 모르는 조그만 가게에서 여성들은 업주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하루에 5~7명의 손님이라는 한국 남자를 받고 강요를 당한다. 마사지만 하는 줄 알고 들어왔으니 돌아가겠다고 하면 업주는 비행기 티켓과 에이전시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못 내겠다고 하면 태국의 가족에게 알려겠다고 협박을 한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8), 「이주여성들의 #Me Too」자료집.

<사례 토론 이슈>

- ⇒ 이주노동자가 겪는 특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 일반적인 여성 노동자가 겪는 성폭력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이와 같은 피해자가 주위에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 이주노동자는 어떤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토론 사례 ⑤

이주노동자 성폭력 가해 사례

해운대 경찰서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어 (몰카가) 범죄이고 처벌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자료: 연합뉴스(2017.07.25.), 몰카 범죄인 줄 몰랐다... 외국인 근로자 피서지 촬영 주의보.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4173200051>

<사례 토론 이슈>

- ⇒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 ⇒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토론 사례 ⑥

외국인 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

국내 대학에 유학 왔거나 워킹홀리데이로 방문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묵는 임대 건물이 있다. 기숙사에 들어온 한 여성 유학생은 건물 관리를 맡은 한국인 남성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유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건물 관리자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다.

자료: MBC(2019.05.15.), 외국인 학생 '성추행' 의혹... 건물 관리인 입건.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293731_24616.html

<사례 토론 이슈>

- ⇒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이와 같은 피해자가 주위에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 외국인 유학생은 어떤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읽을거리 ①

친족 성폭행·혼인 취소...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약탈 14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월 25일, 한국인 시아버지의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됩니다. 형사재판 도중 한국인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아내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청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이 13살 때 베트남에서 '약탈혼'을 당해 14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10년 사이 베트남과 한국에서 아동 성폭행과 친족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한국 남편으로부터 혼인 취소까지 당한 이 여성의 출국은 '돌아갈 곳 없는 곳으로의 귀향'이었습니다. 그의 울퉁불퉁한 길에 박힌 이주, 가족, 결혼, 출산, 국가라는 돌부리들을 더듬었습니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 소수민족 여성. 13살 때 아동성폭행 '뺏버혼'(불법 납치혼)으로 출산
22살 때 새 삶을 꿈꾸며 한국 남성과 결혼. 결혼생활 6개월 만에 시부에게 성폭행당함. 10년 새 2차례 가장 끔찍한 폭행 피해

----- (중략) -----

대법관·가정법원장 출신과 공감·민변. 대규모 공익변호인단 꾸려 피해 여성 '푸영' 변론
남편 쪽도 지법 부장판사 출신 선임. 국제결혼 피해 센터 의견서 내며 지원. 이주-인권-결혼 둘러싼 상징적 사건

1·2심 혼인 취소와 위자료 지급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며 극적 반전
파기환송심 혼인 취소로 결국 귀국. 더 이상 '우리끼리' 재생산 힘든 한국. '쓸모'없다고 돌려보내지는 여성들

----- (중략) -----

파기환송심 결과는 언론에도 나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때까지 언론이 주목하던 푸영은 그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던 2017년 6월 22일 조용히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2012년 한 남자로부터 '선택받아' 온 한국에서 푸영은 5년 만에 베트남으로 돌려 보내졌다. 5년 중 4년 5개월을 침터에서 살며 소송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 시간은 2003년 한 남자로부터 '지목받아' 끌려간 뒤 푸영이 잃어버린 시간과 다르지 않았다.

베트남 여성 푸영은 '세련된 글로벌 가족'뿐 아니라 '품어야 할 다문화 가족'으로도 한국에 남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푸영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때만 '귀중한 자원'이 됐다. '2017년 한국인 가정의 출산율이 1.03명으로 전망될 때 다문화가정 출산율은 3.0명을 훌쩍 넘는다'(유종근, 2017년 9월18일 <국민일보> '다문화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는 '발견' 속에서 그들의 몸은 한국 여성들이 꺼리는 출산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 '기능'에서 이탈한 여성

들은 한국에 머물지 못하고 '반쯤'됐다. 한국 가정이 더 이상 한국인끼리만으론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을 지탱하면서도 한국 밖으로 쫓겨나는 그들의 현실과 공존했다. 가난의 탈출구를 찾아온 이주 여성과 주류에서 배제된 한국 남성들의 '속성 결합'을 국가가 방조·지원하며 재생산을 도모하는 한 '푸영의 잔혹서사'는 끝없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에 도착한 푸영은 한동안 남부 호찌민 인근에 머물렀다. '가치를 잃은 여자'가 돌아가 숨을 집이 고향엔 없었다. 출국 전 그는 "소송이 잘돼서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돈을 벌어 미싱을 사고 싶다"고 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들을 잘라내고 앞뒤 시간을 이어 붙여 삶을 다시 짜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2016년 6월 30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행사에서 푸영이 종이를 들고 한국말로 더듬더듬 읽었다.

"2심 재판까지 지고 나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1년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판결 날 짜가 잡힌 뒤 고열에 시달렸는데 너무 불안해서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 (6월 중순 파기환송심 제출 증거를 모으러 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에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소송에서 꼭 이겨서 당당하게 다시 고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국 몇 달 뒤 푸영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2016년의 다짐'을 이루지 못한 채 마을로 돌아갔다.

자료 : 한겨레신문(2018.01.20), 친족성폭행·혼인취소...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약탈 14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28611.html>



읽을거리 ②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폭력 '캣콜링'(catcalling) 외국인 남성이 "유 아 소 뷰티풀"... 칭찬 아닌 '성희롱'

이태원 유흥가 등 길거리서 피해 경험담 잇따라
서구권에선 규제 움직임... 국내선 처벌 규정 모호
성희롱인지 잘 모르고 입증 어려워 신고도 적어
"유 아 소 뷰티풀!(You are so beautiful!)"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걷던 여성 서 아무개(22) 씨는 길에서 뜬금없이 '외모 칭찬'을 들었다.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 무리에서 들려온 말이었다. 서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가려 하자, 남성 무리는 서 씨를 향해 웃으며 휘파람을 불고 30초가량 따라다녔다. 겁이 난 서 씨는 정신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직장인 이 아무개(25)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7월 저녁 이태원역 주변을 걷던 이 씨는 '외모 칭찬'을 서로 다른 남성 무리에게 두 번이나 들었다. 한 무리 속 남성은 짧은 치마를 입은 이 씨에게 "옷이 멋지다"며 영어로 추파를 던졌고, 다른 무리의 남성은 서툰 한국어로 "다리가 예쁘다"고 외쳤다. 이 씨는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유흥가 등지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갑자기 외모 칭찬을 하는 식의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 성희롱을 하는 외국인 남성들이 늘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캣콜링은 길을 지나던 여성의 외모를 갑작스럽게 칭찬하거나 노골적으로 응시하는 성희롱이다. 해외에선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말 모임 등이 잦은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캣콜링'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태원에서 여러 나라 남자들이 단체로 캣콜링한다", "이태원 지나서 녹사평길 걸어오는데 외국 남자들이 또 캣콜링해서 짜증났다" 등의 글을 올렸다.

서구권에서는 캣콜링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41항을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지켜보는 행동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캣콜링 성희롱은 '불쾌하긴 하지만 신고까지 할 정도인지 싶은' 수준에 머물 때가 많아 신고 자체가 적은 편이다. 사건화됐을 때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막막한 것도 사실이다.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말로 이뤄진 길거리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프랑스의 마를렌 시아파 성평등 장관은 내년 표결을 목표로 캣콜링을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아파 장관은 처벌 가능한 캣콜링으로 '낮선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얼굴 10~20cm 안쪽으로 다가와 말하는 것', '거리에서 위협적으로 계속 쫓아오는 것', '연락처를 수차례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벨기에에서는 2014년 거리 성희롱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포르투갈과 페루도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자료 : 한겨레신문(2017.12.21.), 외국인 남성이 "유 아 소 뷰티풀"... 칭찬 아닌 '성희롱':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510.html

2. 요양보호사 대상

1 교육목표 및 필요성

▶ 교육목표

-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유형 및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로서 가지는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교육 필요성

- 요양보호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노인, 장애인²⁷⁾ 등 돌봄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직업 특성상 성희롱 및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미비한 상황이다.
- 요양서비스 대상자들은 고객으로서 서비스 이용권을 갖고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언제든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 성희롱 등을 경험하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의사 표현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요양보호사는 1년에 1회 법정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만, 요양서비스 대상자(노인, 장애인) 및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역시 필요하다.
-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장이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가 적다.
- 요양보호사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예방법 및 개선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 대상자를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으로만 여겨 업무 중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참고 넘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진다. 업무 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7)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까지 병행하여 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https://angelsitter.co.kr/board.view.php?board=bbs2&no=18&p=> 사이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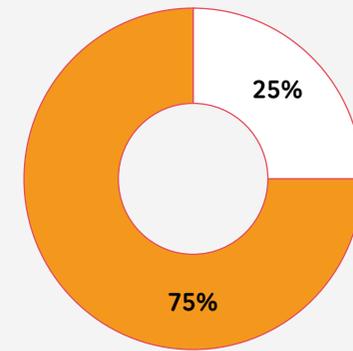
2 교육대상의 특성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종사자의 특성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가 시행됐다.
- 요양보호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직업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 유지,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고령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요양원을 이용하는 수는 15만6435명이며 방문 요양서비스 이용자 수는 41만930명이다²⁸⁾.

[그림 9]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현황

■ 재가 서비스 기관
□ 노인요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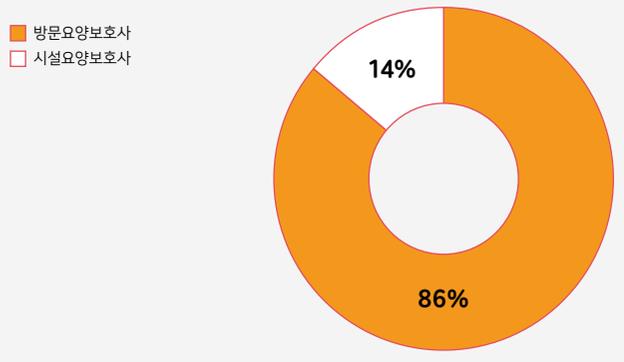


자료: 한겨레신문(2019.05.13.),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 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616.html#csidxb358ca408d7078a8ce64a5a75c61908>

-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전체 요양보호사는 41만5621명으로 이중 방문요양보호사는 34만6149명이며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6만9472명이다.

28) 한겨레신문(2019.05.13.),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 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616.html#csidxb358ca408d7078a8ce64a5a75c61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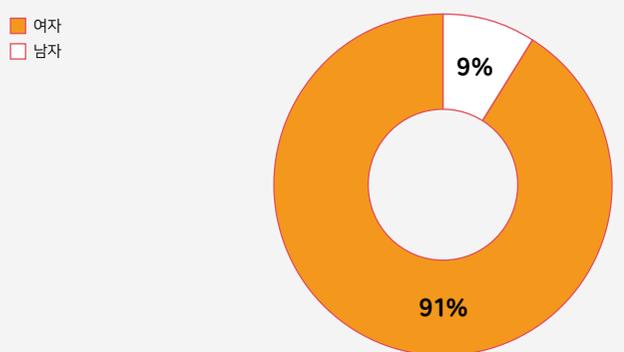
[그림 10] 요양보호사 기관별 종사비율



자료 : 한겨레신문(2019.05.22.), 어른신 돌보러 방문요양 왔는데... "발을 매라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822.html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현황(2019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요양보호사의 74.41%가 50대 이상이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현황(2019년 3월 기준)²⁹⁾에 따르면 남성 14만 4425명, 여성 148만 3446명으로 여성이 전국 요양보호사의 91.3%에 달한다.

[그림 1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 명)



자료: 보건복지부, 2019.03

29) 한겨레신문(2018.05.15.), "얽지 말고 뛰어다녀" CCTV는 요양사도 따라다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918.html#csidx9413d7c8e0a9e2a954790e804f61243>

▶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 및 유형

- 본인 또는 주변 제3자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요양보호사는 94명(12.62%)이며 요양서비스 대상자로부터가 78명(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13명, 이용자와 가족 모두로부터가 3명이었다.³⁰⁾
- 방문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설문 조사(총 216명 대상)에서는 요양서비스 대상자나 가족이 성희롱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7%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1%가 '요양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경험이 있었다.'에 답했다.³¹⁾
- 근무 장소에 따라서는 요양시설보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홀로 사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가야 하다 보니 요양서비스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피해가 빈번하다.³²⁾

▶ 요양보호사 대상 성희롱 및 성폭력의 특징

- 요양보호사 대상 성희롱의 특수성
 - ➔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나 상급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 종사자 외에도 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대상자의 가족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수익을 잃는 구조다.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에 의한 성희롱을 알리면 장기요양기관은 피해자의 일자리를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를 알릴 경우 요양보호사는 오히려 해고될 위험이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 노인주거시설에서의 성희롱 유형 사례
 -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무료함을 달래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려는 담합행동,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하는 요양보호나 간호처치를 접하면서 노인들이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성희롱이 발생한다.³³⁾

30) 이호용, 이성기, 최성경, 손영화.(2014).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1) 한겨레신문(2019.05.22.), 어른신 돌보러 방문요양 왔는데... 발을 매라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822.html

32) 국민일보(2019.06.07.), "만져달라" "옷 벗자" 성범죄에 떠는 여성 재가요양보호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426&code=11131100&cp=nv>

▶ 요양보호사 성희롱 유형³⁴⁾ 및 특성³⁵⁾

- 시각적 성희롱
 -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 상대방의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 물리적(육체적) 성희롱
 - ➔ 입맞춤, 포옹, 신체적 접촉,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행위
- 기타
 - ➔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 등

3 강의 기획 포인트

▶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 예방교육³⁶⁾

- 돌봄의 대상이 노인, 환자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존재라 여기며 성희롱, 성폭력 상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희롱, 성폭력이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 의한 '완력'으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생기는 오해다. 위계에 의해 성폭력,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를 설명함과 동시에 예방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의 봉사 정신을 강조하면서 성희롱 혹은 성폭력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의 노하우로 넘길 일'로 치부하는 등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가시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 재가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에겐 작업 공간이 공적인 공간이나 요양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편안한 사적 공간으로 사적인 친밀감을 느끼기 쉬운 조건이다. 이러한 친밀감을 토대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운 경향이 크다. 친밀감이 오랜 기간 유지된 경우에는 문제 제기가 더욱 어렵다.

33) 임춘식, 이인수.(2013). "요양보호사가 노인주거시설에서 경험한 성희롱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33』, 220-259

34) 「2018년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상의 성희롱 유형과 비교하여 직업적 특수성이 부각된 내용

35) 최성경.(2016).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특수성과 법정책임 과제". 『법과 정책연구41』, 365-391

36) 김양지영.(2009). "성희롱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 실태", 『증가하는 돌봄 일자리, 은폐되는 성희롱: 돌봄 노동자 성희롱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 4-88.

- '성희롱 문제를 감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질 높은 서비스를 막는 것'임을 강조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문제 제기 및 적극적 대처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노동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내도 함께 해주며 문제 제기와 적극적 대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50대 여성으로 새롭게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을 통한 문제 제기 및 적극적 대처를 통해 부당한 경우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수업 및 관련 정보 등을 접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요양보호사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 관련 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풀어쓴 교육 구성이 필요하다.
- 직장 내 성희롱은 연 1회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행위자인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요양서비스 대상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4 상황별 액션플랜

- ❗ **예방을 위하여**
 -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참고 견딜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상담하여 도움을 받거나 법적 대응을 한다.
- ❗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에서는 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서비스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 혹은 소속기관에 바로 사실을 알린다.

○ 사업주 혹은 소속기관에 사실을 알렸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했을 경우 동일법에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 소속기관의 역할

-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속기관의 역할은 관련 법률 37)에 명시되어 있다.
- 가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다.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며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상황에 따른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대한 후속 관리 역시 철저하게 진행한다.
- 만일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특정 기관에서 서비스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부분)과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종사자의 인권과 관련한 성희롱과 관련해 소속기관이 의무교육을 해야 함을 설명한다.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5 관련 자료(토론거리 및 읽을거리)

토론 사례

요양서비스 대상자에 의한 성희롱

①

남성 노인이 혈령한 속옷만 입고 다리를 벌리고 누워서 다리를 주물러 달라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보여주거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

자료 : 국민일보(2019.06.07.), “만져달라” “옷 벗자” 성범죄에 떠는 여성 재가요양보호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426&code=11131100&cp=nv>

<사례 토론 이슈>

- ⇒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희롱 외에 어떤 유형의 성희롱이 있을까요?
- ⇒ 업무 중에 난감했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 ⇒ 이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토론 사례

요양서비스 대상자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②

“이용자의 배우자분이 나를 꼼짝 못 하게 손목을 잡고 ‘나는 애기 엄마가 왜 이렇게 예쁘지 모르겠어. 애기 엄마가 필요하면 우리 집엔 돈 많으니까 갖다가 쓰고, 이자 없으니까 쓰고 가져다 놔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꼭 안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심장이 떨리고 모욕당했다는 기분이었어요.”

자료 : 서울시 어르신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2018). 「2017 어르신돌봄노동자 노동상담 사례집」 59쪽

<사례 토론 이슈>

- ⇒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 대상자 외에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주변인(가족, 친지)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 특수한 직업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토론 사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및 주변인에 의한 성희롱

③

A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 방문할 때, 동네 사람들이나 서비스 이용자 친구들의 언행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A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보면 “안방마님.”이라고 부르거나 “마님, 오셨어?” 하며 부르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그것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웃고 있어서 A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료: 김양지영(2009), “성희롱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 실태”, 「증가하는 돌봄 일자리, 은폐되는 성희롱: 돌봄 노동자 성희롱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 44쪽

<사례 토론 이슈>

⇒ 이와 같은 사례는 어떤 유형의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토론 사례

동성 서비스 대상자에 의한 성희롱

④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제 몇 번 했어?” 어휴... 그러니까 할 얘기는 아무튼 다 하는 거야. 그 성에 대한 말을 다 해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막 하니깐 어떨 때는 남자들이 그러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요. 이렇게 언어적 폭력을 자주 당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걸레질을 하다 보면 앞드려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성기를 찌른다) 막 그러는 거야. 그분이 “**까라, **까라, **까라”라며 노래를 부르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는 데도 말을 안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그 할머니께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여자가 하는 말이라 그런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 김양지영(2009), “성희롱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 실태”, 「증가하는 돌봄 일자리, 은폐되는 성희롱: 돌봄 노동자 성희롱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 45쪽

3. 노인 대상



1 교육목표 및 필요성

교육목표

- 젠더기반 폭력 개념을 이해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인다.
- 성폭력·가정폭력 개념을 인지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켜보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
-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움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통해 폭력을 예방한다.

교육의 필요성

-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들이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어 노인들 간의 관계, 세대 관계에서 더욱더 성평등적인 감수성이 요구되고 있다.
- 연장자 존중의 유교문화에 익숙한 노인들은 개인주의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연장자이기 이전에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여성 노인의 경우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가 발생해도 참고 인내하거나 숨기는 것을 여성의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 많아, 성폭력·가정폭력에 있어서 취약한 편이다.
- 과거 세대에 학습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혹은 조력자로서 신고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적극적 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요양보호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태도가 폭력,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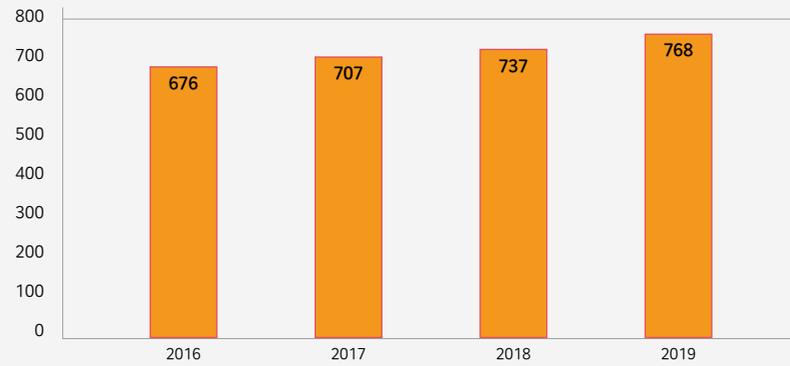


2 교육대상자의 특성

노인인구 특성

- 고령층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0.8%였으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인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2019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758만 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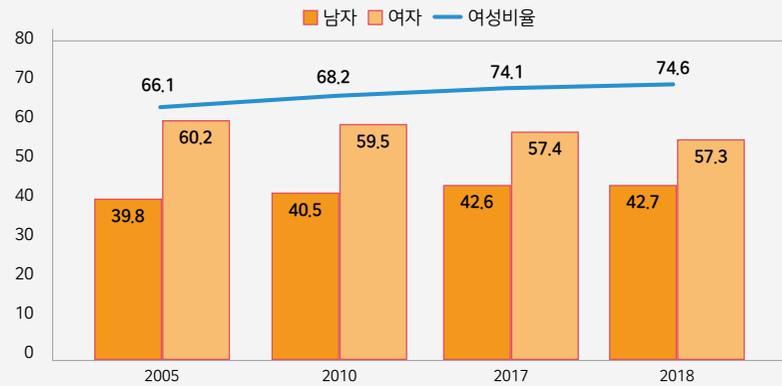
[그림 12] 65세 이상 인구 수(2016-2019) (단위 : 만 명)



자료 : 통계청.(2019).「인구주택총조사」

○ 65세 이상 고령자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에 68.2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4.6명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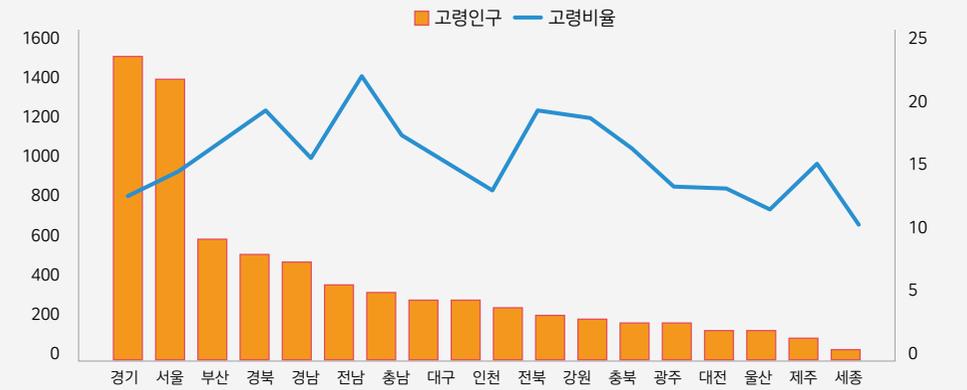
[그림 13]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성비(2005-2018)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9).「인구주택총조사」

○ 2018년 기준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8%로 가장 높고, 세종시가 9.0%로 가장 낮다.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45년에는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지역별 고령인구 및 비율(2018)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2017).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노인 경제활동 특성

○ 2018년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 고령층 인구 1,344만1천 명 중 56.7%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55.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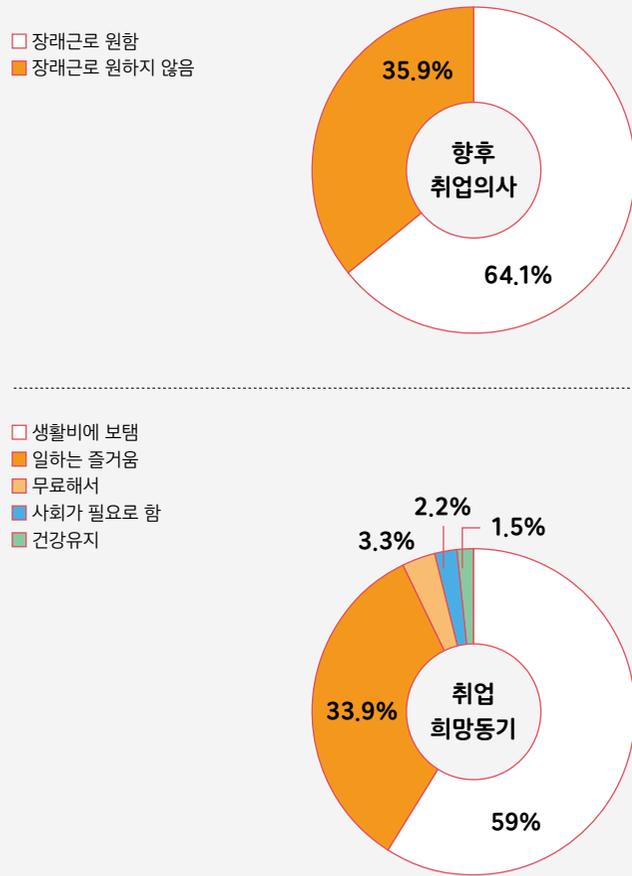
[그림 15] 55~79세 고령층 인구수, 취업자수 및 고용률 (단위 : 명, %)



출처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55세~79세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5.6%로 가장 높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9.6%, '농림어업'이 14.4%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농림어업'은 각각 0.3%p, 0.1%p 상승했다. 15세 이상 취업자 전체 구성비와 비교해보면 '농림어업' 비중은 고령층(14.4%)이 8.9%p 더 높아 농림어업의 분야의 고령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1%(2018년)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그 중 59%가 생활비 보탬을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설명했다.
- 경제활동 참가율이 도시지역이 24.1%인 반면 농어촌은 45.9%로 약 두 배에 달한다. 80~90대 분들도 농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계를 더욱 중요시해 성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6] 55세~79세 고령층 중 취업을 원하는 이유(2018)



자료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노인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

- 65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10세 미만의 손자·손녀를 직접 돌봐줬다고 응답한 비율은 4.4%이며, 이 중 1명의 손자·손녀를 돌보는 비율이 56.7%, 2명이 37.7%, 3명 이상은 5.6%로 나타났다.

[표 6] 손자·손녀 돌봄(65세 이상)

(단위 : %)

연도	손자·손녀 돌봄 비율	돌봄 손자·손녀의 수			
		계	1명	2명	3명 이상
2014	6.4	100.0	62.6	32.3	5.1
2017	4.4	100.0	56.7	37.7	5.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해당년도

- 노인의 23.0%가 경로당(1주 평균 3.9일)을 이용하고, 9.3%가 노인복지관(1주 평균 2.5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라 이용비율의 차이가 있어 교육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로당에서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학력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주민센터, 공공문화센터, 사설문화센터 등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여가문화 활동 참여의 경우 여가활동 경험률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복지관 시설이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인구수에 비해 복지관 수가 적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로당 이용률은 도시지역이 11.5%인데 비해 농어촌은 48.5%로 4배 이상에 달한다.
- 2017년 기준 1년간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24.2%로 2년 전(24.5%)보다 0.3%p 감소했다. 문화활동 종류 중에서는 '영화관람'이 75.9%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연주회 관람'이 22.5%, '박물관 관람'이 21.6%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중·주말 모두 대부분 'TV시청'과 '휴식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노인 여가 활동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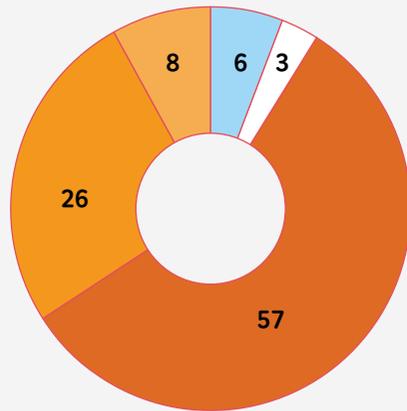
구분	TV 시청	문화예술 관람 및 활동	스포츠 관람 및 활동	관광 활동	취미 자기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기타
주중	91.4	5.0	13.3	2.8	14.8	69.8	11.3	5.0
주말	86.2	5.7	12.3	8.0	11.8	70.0	18.9	3.8
향후	32.4	22.4	16.7	65.8	28.1	33.3	30.6	1.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해당년도

○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전보다 증가했다. 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 모임이 다양해지고 수가 늘어나고 있어 참여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가 참여하여 활동하는 단체는 계, 동창회와 같은 '친목 및 사교단체'가 56.5%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가 26.2%, '취미, 스포츠 및 여가활동단체'가 8.0%이었다.

[그림 17] 참여 단체 (65세 이상, 2017년) (단위 : %)

- 친목 및 사교단체
- 종교단체
- 여가활동단체
- 지역사회모임
- 시민사회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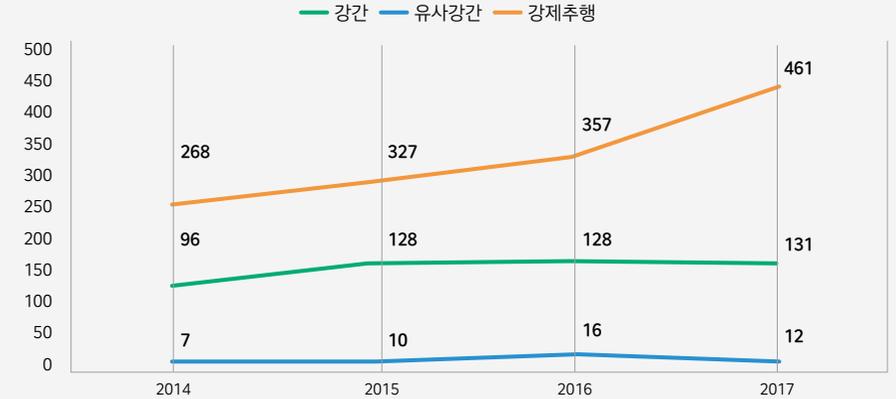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7). 「사회조사」

▶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 현황 및 특성

- 노인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노인 학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노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노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범죄의 피해자인 사건과 가해자인 사건 모두 늘어나고 있다. 피해의 경우 대다수가 여성 노인이며 암수범죄(실제 범죄가 발생했지만, 피해

자가 신고하지 않아 수사기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실제 피해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8] 60세 이상 노인 성폭력 피해 건수 추이 (단위 : 건)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해당년도.

- 노인층에서도 SNS, 디지털을 활용한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동영상을 보내는 등의 디지털 성폭력³⁸⁾이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을 알려달라고 물으면서 일부러 불법 동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발생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 가부장적 사회에 익숙해진 탓에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으며 가정폭력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상해, 살인 등을 동반하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 금전적 폭력, 성적 학대 또한 가정폭력의 범위³⁹⁾에 포함됨을 이해시켜야 한다.
- 달라진 사회의 성평등 및 성인지 관점을 따라잡지 못해 본인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손자, 손녀 혹은 손자, 손녀의 친구에게 무심코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어 본인이 오히려 놀랐다는 사례가 많아 변화한 사회 인식에 따라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38) 국민일보(2019.06.07.), “만져달라” “옷 벗자” 성범죄에 떠는 여성 재가요양보호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426&code=11131100&cp=nv>

3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도서 벽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활용 매뉴얼”.



3 강의 기획 포인트

▶ 성평등 인식 수준에 따른 강의 기획

- 노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단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학력, 은퇴 전 직업, 경력 등 모든 것이 노인의 성평등 인식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밀접도 높은 사례를 통해 피해 유형을 설명한다.

사례 1. '미투 운동'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인식

마을 노인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던 한의사의 추행을 '송한 짓'으로만 생각해왔다는 한 노인 여성이 최근 언론을 통해 '미투 운동'을 접하고 나서 그것이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참고 넘길 일이 아니라 고발해야 할 성폭력이라는 것을 미투 운동 이후에 알게 된 것이다.

자료 : 경향(2018.02.28.), "그 송한 짓, 성폭력이구나"... '용기의 언어' 된 미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82151005&code=940100#csidxd-c83876330e781ea76e31ab6364ae25

- 노인은 '무성적 존재'가 아니며 성폭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주로 집에 머무는 60대 중후반~70세 이상 여성에게서 성폭력 피해가 더 잘 은폐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의 60·70대 이상 여성들은 '성은 남성 중심적인 것이고, 여성은 어떤 형태의 성폭력을 겪든지 수치스러운 일, 조용히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던 세대로 (자의든 타의든)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치부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폭력이 더 쉽게 일어나고 있다.⁴⁰⁾

사례 2.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

달리던 택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여성의 가슴 부위를 서너 차례 손으로 더듬었던 가해자 남성이 이 사건으로 교감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60대 여성은 성추행에도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인 교감의 해임을 취소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동 경위와 주위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살의 여성이고, 요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정황으로 미뤄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광주여성민우회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과 대법원 의지를 거스르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김미리내 성폭력상담소장은 "항소심 판결은 여전히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경험이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 20대 여성만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나"고 일갈했다.

자료 : 한겨레신문(2019.07.17.) '사회경험 많은 60대 여성, 성추행 수치심 적다' 역대급 황당 판결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02175.html>

- 여성 노인 자신도 본인을 무성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생애 주기를 통틀어 양질의 폭력예방교육의 경험 자체가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연대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높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및 공공의 지원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강의 기획이 필요하다.
- 남성 노인의 경우 남성 중심 성문화를 체화한 시간이 길어 성폭력,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에 익숙해서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만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식의 전환을 위해, 또 세대 간의 소통과 성평등한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평등 문화도 달라졌음을 알리며 성인지적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감수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폭력예방을 위한 역할을 제시하여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거주지역에 따른 강의 기획 구성 차이

- 도시지역은 평생교육 참여율(높은 노인복지시설 접근성)⁴¹⁾ 이 높아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예방교육 또한 여러 번 수강했을 가능성도 있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노인복지시설 및 상업적 자원이 많아서 친목 및 사교활동⁴²⁾ 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을 교육함으로써 친구, 연인 등 친밀한 관계나 공적인 관계에서 예의를 지켜 소중한 타인과의 대화의 경험을 확장하고 좋은 만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80대 이상⁴³⁾ 도 여전히 경제활동(농사 등)에 참여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그렇지만 노인의 권리를 찾고 안전

40) 주간경향(2018.12.17.), "[표지 이야기]홀로 사는 노인 여성도 범죄의 표적",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인터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12101539081&pt=nv#csidx4d7696027b5c852992e1f6034f8dd74>

41) 김연희.(2013).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 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189~216쪽

42) 전진우.(2019). "콜라텍에 형성된 노인여가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43)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농촌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발일을 할 사람들도, 마을을 지키는 이들도 대부분 70대 이상 여성 노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농가 인구는 40대까지 남성이 더 많은 반면, 50대부터 성별 역전 현상을 보인다. 특히 60대 이상 인구를 따지면 여성은 약 71만 명인데, 남성은 약 64만 명에 그친다." 시사인(2019.08.12.), 농촌에서 발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는 누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64>

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인지시키며 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 농어촌은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어도 드러내기를 어려워하고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성폭력 관련 자원을 안내하고 익명으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안내한다. 2차 피해를 막는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안내한다.
- 마을회관, 경로당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부분 성폭력은 아는 사람⁴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낯선 이를 경계하라’는 것이 통념이지만 실제로는 잘 알고 지내는/이웃의/젊은 남성들에게⁴⁵⁾ 성폭력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즉, 노년 여성에게도 연장자나 동년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⁴⁶⁾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의 구성 TIPS

- 🔊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성평등 교육’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교육에 비해 성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세대(손자, 손녀 등)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감수성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인식시키는 방법도 있다.
- 🔊 대상자 노인의 학력이나 은퇴 전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한 강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노인들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⁴⁷⁾에 따라 강의의 세부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 TV, 영화 등을 주로 시청하는 등 영상물에 익숙해 있기에 사례 중심의 영상을 활용한 교육도 좋다.
- 🔊 농어촌 등 도서 벽지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의 경우 기자재 사용이 어려워 구술로 교육할 수도 있다. 구술로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운데, 교육 대상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 농어촌의 경우 생계를 우선시하며 교육 참여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교육이 본인의 권리를 알아가고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교육을 진행한다.

44) 연합뉴스TV(2018.4.9.), 성폭력 피해자 60%, '아는 사람'에 당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aES7IFKKZk>

45) “...한의사는 치료를 이유로 여성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할머니들은 쉬쉬해왔던 서로의 불쾌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게 그 미투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했다. 할머니들의 여든다섯 삶에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언어’가 생겼다.”

46) “...90대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노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집으로 들어온 노숙인(47)은 그를 성폭행하던 중 방문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의 집에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들어가 노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주간경향(2018.12.17.), [표지 이야기] 홀로 사는 노인 여성도 범죄의 표적.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12101539081&pt=nv#csidx4d7696027b5c852992e1f6034f8dd74>



4 상황별 액션플랜

! 예방을 위하여

-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1년 기준 노인의 성범죄는 538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242건을 기록했다.⁴⁸⁾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친목 활동,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등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장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차별과 폭력을 인지하고 인권을 중시하며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

! 사건 발생시

- 피해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수치심을 느끼거나 노인의 성폭력 피해를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해자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을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문화를 함께 조성해야 하며, 신고가 궁극적으로 피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한다.
- 폭력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은 없으며 모든 것은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목격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 반장, 주민대표의 역할

- 가정폭력은 주로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어 제3자가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장 등 주민 대표에게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신고가 필요한 상황 및 신고 후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반장 등의 주민대표가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젠더기반 폭력예방에 도움이 되어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47) 성경원.(2005).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노인의 성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48) 주간경향(2018.08.27.), [특집] 경제 이유로 노인 범죄 늘어난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808201443321&code=115>



5 관련 자료(토론거리 및 읽을거리)

토론 사례

성폭력 인지 부족으로 발생한 사건

①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턱과 볼을 만진 남성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남성은 귀여운 마음에 아이를 쓰다듬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자료 : 농민신문(2019.05.22.), "달 같아서 그랬다? 성범죄입니다!"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11726/view>

<사례 토론 이슈>

- ⇒ 귀엽다고 가볍게 터치하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는가?
- ⇒ 손자·손녀를 돌보거나 만날 때, 어떤 점을 주의하고 고려해야 하는가?

토론 사례

노인 대상 성폭력 사례

②

올해 78세인 A 씨는 지난봄에 겪은 악몽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노인정에 함께 다니던 70세의 이 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덤벼든 것이다. 노인정 회원들과 같이 술을 마실 땐 친구처럼 굴던 이 씨가 부회장 자격으로 이사 선물을 주겠다고 하며 세제를 사 들고 따라오더니 급기야 마수를 뺀 것이다. 이 씨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자료 : 여성신문(2015.10.01.), 5년간 노인 대상 성범죄 76% 급증... 여성 노인 "성폭력 두려워요".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99>

<사례 토론 이슈>

- ⇒ 노인들 사이에서 또는 노인과 다른 세대와의 관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가?
-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게만 당하는 것인가?

토론 사례

노인 대상 데이트폭력

③

77세인 유부남 남성이 60대 여성이 장사하는 곳을 찾아와 좌판을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왔다.

자료 : 여성신문 (2013.12.30.), "여성 노인 성폭력: 할머니는 성폭행당하지 않는다고?"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87>

<사례 토론 이슈>

- ⇒ 노인은 스토킹하거나 당하지 않는가?

활용방안

IV

1.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2. 유의사항

3. 공통 Q&A

1.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1 이렇게 사용하세요!

- 각 교육대상에 따라 제시된 교육목표와 교육 접근 방법에 차별성이 있으므로, 대상에 따른 차이를 숙지한 후 강의를 기획한다.
- 교육 대상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교육대상마다 강조해야 할 내용과 주의할 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강의를 진행한다.
- 실천 사례를 '예방을 위한 노력', '신고가 필요한 상황', '신고 후 피해자 보호'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일방적인 해법 제시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각 교육 대상자가 스스로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관련 자료는 교육 상황과 대상에 맞게 '전개' 혹은 '심화' 단계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시된 사례의 경우, 제시된 토론 주제로 진행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제시된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 대상 맞춤형 교육 매뉴얼은 각 교육대상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신고방법 정보 전달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대상 내부의 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할 때, 마치 집단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2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의안 작성 시 강의 기획 매뉴얼을 통해 교육대상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 교육대상 분석을 통해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와 강의내용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 사례를 통해 교육대상의 인식을 점검하고,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자기성찰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유의사항



1 이런 점들에 유의하세요!

-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사에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학습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강사 자신이 각 교육 대상자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예: '남편 따라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할머니를 간병하시니 성희롱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 강사 자신이 성별 고정관념이 함의된 발언을 하지 않는다.
(예: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가 여자보다 강하니까요',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 강사가 스스로 강의 중에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예: '여기는 외모로 직원을 뽑나 봐요?', '여자나 남자나 외모는 경쟁력이죠!')
- 그 밖의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
(예: '나이가 가장 어린 분이 발표해 주세요!', '결혼을 못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OO인 이민자들이 문제죠!')
- 공격적이거나 학습자를 놀리는 듯한 유머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강의 진행 자체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성, 정치, 종교 등과 관련된 유머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저속한 언어사용과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누군가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49)

3. 공통 Q&A

- 내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데 우리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
➔ 우리는 폭력 상황에서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주변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주변의 무관심과 무대응은 가해자가 행위를 지속하게 하고 가해자의 폭력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반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임을 고지하고, 그 행위를 제지한다면 젠더기반 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이 더욱 자명해지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인식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젠더기반 폭력을 종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4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7). 『새로운 양성평등교육매뉴얼』. 24쪽

-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신고했다가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 가정 내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변인은 '남의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개입을 망설이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폭력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위험 상황에 부딪친 피해자를 돕는 경험을 통해 얻는 뿌듯함은 신고의 번거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폭력 제지와 예방을 위해 하는 신고나 피해자 지원 등의 활동은 실제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 성폭력은 피해자가 밤늦게 다니거나 짧은 옷차림으로 다녀서 생기는 문제다?
➔ 어떤 범죄도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며 범죄 원인을 찾으려는 경우는 없다. 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문제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젠더기반 폭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폭력은 가해자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살기도 바쁜데, '폭력, 폭력' 하며 나쁜 얘기만 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럽다.
➔ 강사 역시도 폭력 얘기를 계속하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내가 보지 않는다고 젠더기반 폭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면하면 할수록 폭력은 더 확대되고 어드레싱의 문제가 아닌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폭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는 폭력이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왜 맞고 살아. 이혼하면 되지!
➔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혼이라는 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혼보다는 가족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된 경우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쉽게 이혼을 결심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교육이 불편하다.
➔ 젠더기반 폭력의 구조상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일부 학습자들은 불편함을 표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로, 그리고 '현실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경우는 어떠할까? 요즘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을 하면 인사나 신변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로 인한 상처와 고통은 온전히 피해자 개인이 짊어지기도 한다. 더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에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교육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아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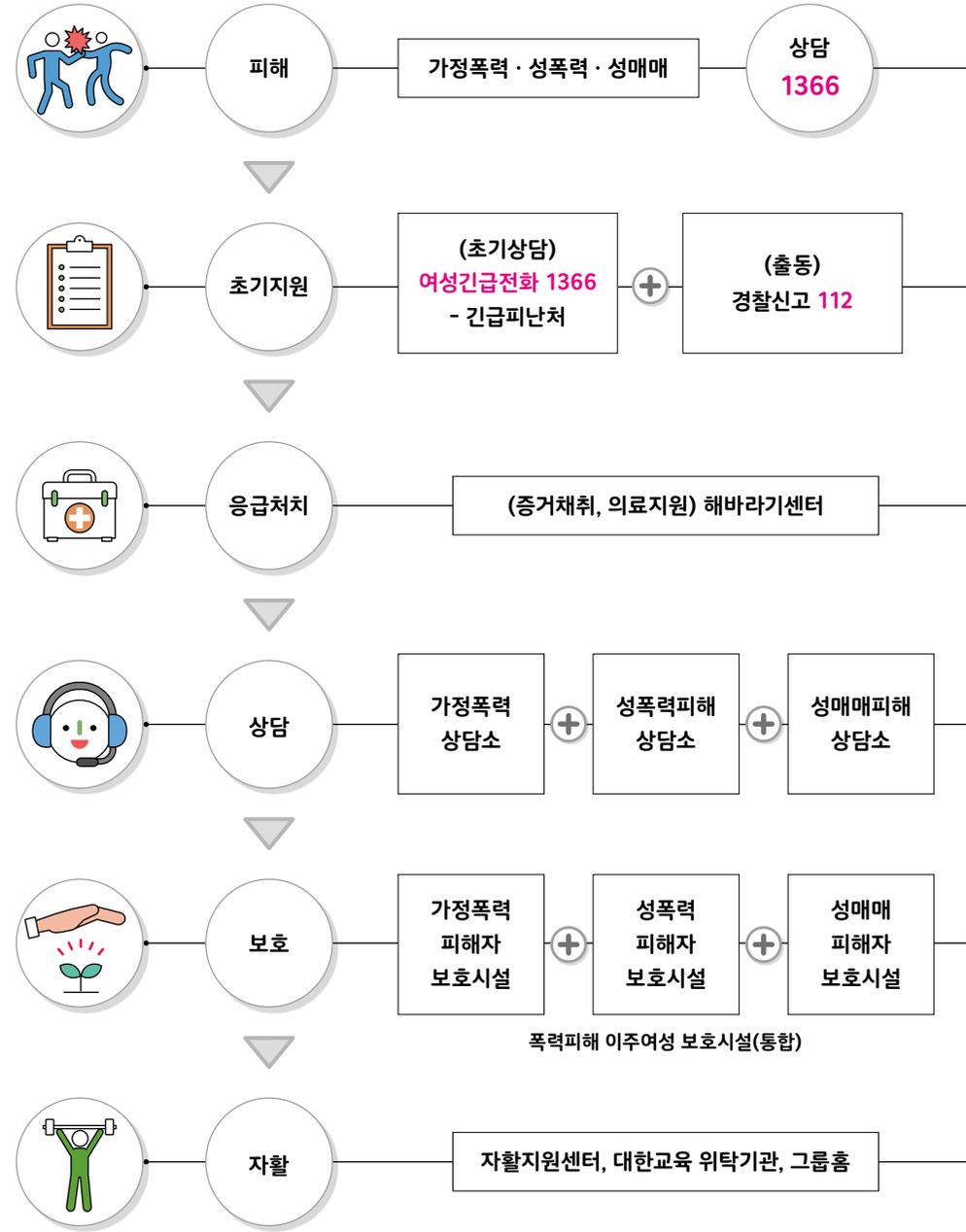
부록



1.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
2. 이주민 대상 지원기관 및 지원정책
3. 요양보호사 대상 지원기관
4. 노인 대상 지원 기관
5. 기타 참고용 자료
6.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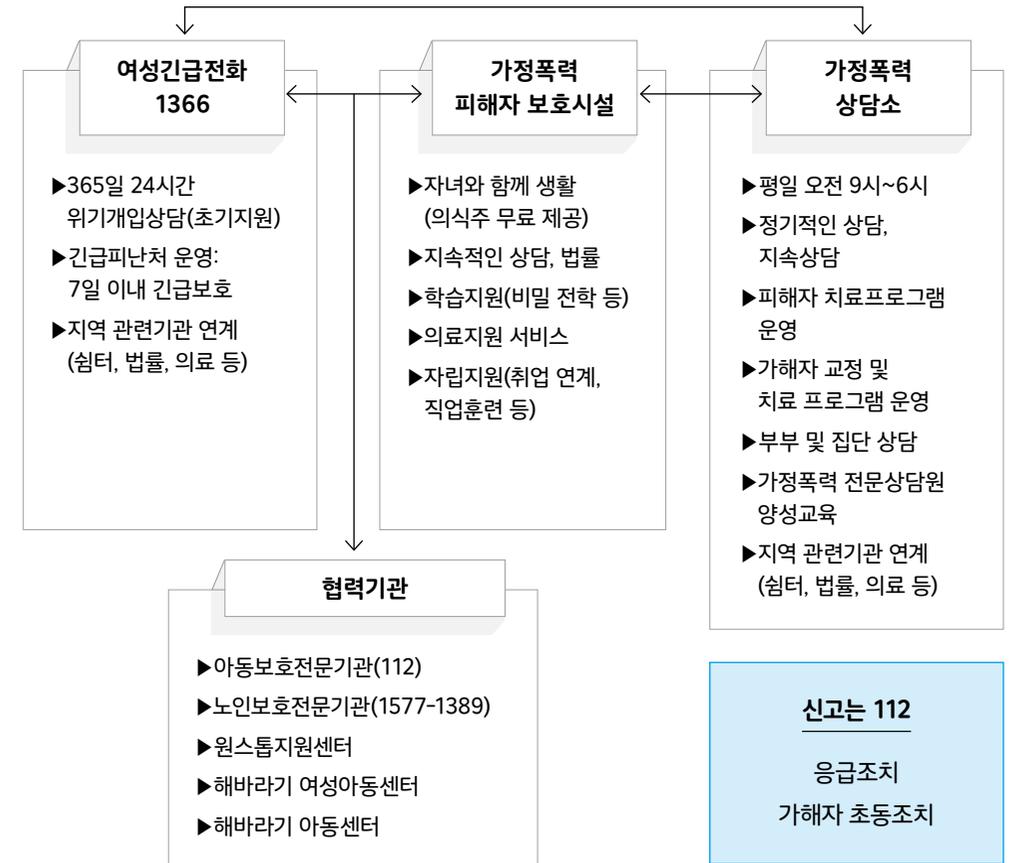
1.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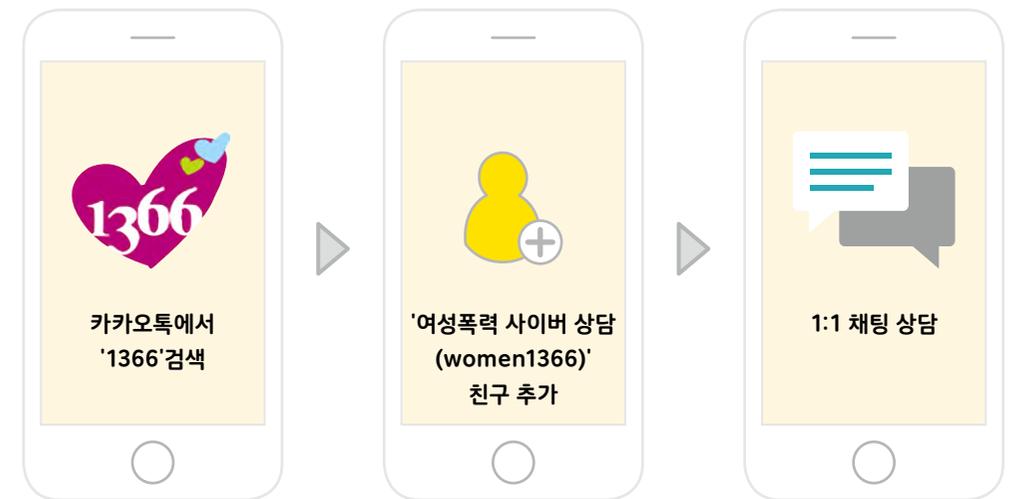


5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top.or.kr/>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⁵¹⁾



* 여성긴급전화 1366의 경우 365일 24시간 카카오톡⁵²⁾ 으로 상담도 가능



5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top.or.kr/>

52)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https://www.women1366.kr/>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⁵³⁾



5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여성가족부.
 5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이제는 알아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례 20」. 여성가족부

○ 성희롱 피해지원 관련기관⁵⁴⁾

①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상담 전화: 1366**

②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기관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 상담

신고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http://www.mogef.go.kr/mstv/wsrMain.do>), 전화(02-735-7544), 우편

상담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은 온라인 게시판 이용

신고자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력인

③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직장 내 성희롱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창구

주소 : <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

④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조사 구제>

전문 상담원과의 인권 관련 상담 제공

상담 전화: 1331

⑤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일터에서의 노동문제 상담

온라인 상담 : <http://youthunion.kr>

본부&서울청년유니온 : 02-735-0262

경기청년유니온 : 010-3845-1003

인천청년유니온 : 010-8782-6015

광주청년유니온 : 062-225-0501

대구청년유니온 : 053-428-5579

경남청년유니온 : 055-275-3150

부산청년유니온 : 010-7919-8051

⑥ 직장 갑질 119

직장 갑질과 말도 안 되는 관행을 바꾸자는 취지로 모인 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 : 직장갑질119

이메일 : gabjil119@gmail.com

⑦ 고용평등상담실

성차별, 모성권, 직장내 성희롱, 비정규직 등 직장 내 문제 상담 지원

서울청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	02-3141-3011
	(사)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3층	02-706-5050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벽산디지털밸리 1303호	0505-515-5050

청별	단체명	주소	상담전화
중부청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39-4, 3층	032-524-8831
	(사)부천여성노동자회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48번길 86, 현해탑플라자 704호	032-324-5815
	(사)수원여성노동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53, 두리빌딩 3층	031-246-2080
	(사)안산여성노동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76, 1107호	031-494-4362
	한국노총 춘천영서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9	033-242-7576
부산청	(사)부산여성회	부산시 동래구 연안로59번길 99	051-504-6638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67 경창상가 5층	055-261-5362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남구 돌질로129	052-261-4493
대구청	(사)대구여성회	대구시 중구 공평로20길 32, 4층	053-421-6758
	(사)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시 서구 국제보상로38길 35	053-428-6340
	(사)경주여성노동자회	경북 경주시 황성로64번길 26	054-744-9071
광주청	(사)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시 서구 경열로 69-1	062-361-3028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2-8	063-286-1633
	한국노총 광양지역본부	전남 광양시 불로로 123 근로자종합복지관	061-792-0365
	(사)제주여민회	제주 제주시 용담로 134, 3층	064-756-7261
대전청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2순환로 1814-39	043-263-9223
	(사)대전여민회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042-226-9790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근로자복지회관	041-551-9119

○ 신고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경찰 112	사건 접수 및 조사,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 조치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1차 상담, 현장상담원 파견 사이버상담, 이메일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가능
이주여성지원센터 1577-1366	13개국 모국어 통역지원 가능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인권 보호 4시간, 365일, 13개 언어지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어도 피해 지원. 이주여성과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상담, 통역(3자 통화 지원), 종합생활정보 제공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02-558-139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02-3667-1389)	학대노인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 ➔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 ➔ 신고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다.
- ➔ 신고를 통해 1차적 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후 겪을 '2차 피해'⁵⁵⁾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 ➔ 택시 내 이용내역, 정보기록 장치(일명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범죄사실 입증 가능하다.

2. 이주민 대상 지원 기관 및 지원 정책



1 이주민 대상 상담 및 신고 센터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 24시간, 365일, 13개 언어지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어도 피해 지원. 이주여성과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상담, 통역(3자 통화 지원), 종합생활정보 제공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미등록 체류자도 가능) 및 동반 아동에게 전국 28개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에서 일시적 보호,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 우즈베크어, 라오어, 러시아어, 타이어, 몽골어, 네팔어 지원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 ➔ 상담가능시간 09:00~18:00(평일), 20개 언어 지원, 재한외국인 행정·생활 종합 안내
- ➔ 사회통합교육,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등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어(방글라데시), 우루두어(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필리핀), 아랍어, 상할리어(스리랑카)

○ 외국인력 지원센터 1644-0644

- ➔ 09:00~18:00, 14개 언어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상담 및 통역 지원
- ➔ 한국어(1), 몽골어(2), 베트남어(3), 중국어(4), 인도네시아어(5), 태국어(6), 영어+필리핀

55) 성폭력 이후에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난, 책임 전가, 신상 공개, 괴롭힘이나 불이익 등의 피해를 뜻함.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며, 사건을 호소하고 해결 절차를 밟는 것을 어렵게 함.

어(7), 스리랑카어(8), 우즈베키스탄어+러시아어(9), 파키스탄어+인도어(10), 캄보디아어(11), 네팔어(12), 미얀마어(13), 방글라데시어(14) 지원

*괄호 안은 내선번호

○ 이주여성 성폭력·가정폭력 지원 단체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0120
	이주노동자노동조합	02-2285-606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2-312-8297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105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부산시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051-865-2603
	이주민과함께 부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1-304-4729
대구시	대구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053-944-2977
인천시	인천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032-527-0090
경기도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031-595-0310
	두레방 (이주여성성매매피해쉼터 운영)	031-841-2609
	안산이주민센터	031-492-8785
	안산이주여성상담소	031-491-4340
강원도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033-765-1366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033-257-4687
충청북도	충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043-223-5253
충청남도	천안 모이세(외국인근로자센터)	041-523-2666
전라북도	부안여성농업인센터	063-581-1191
	전주여성의전화	063-287-7324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063-227-2990
전라남도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061-282-1562
경상남도	경남외국인노동복지센터	055-277-8779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055-741-63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064-712-1141

자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7). 「이주인을 위한 성인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2019년 수정 및 추가



1 이주민 대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

▶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

- ➔ 해바라기센터는 상담·의료·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기, 통합형은 24시간 여성경찰관 근무)
- ➔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 지원
- ➔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가명 조사, 이전비 지원, 비상호출기 지원 등)

※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 고소가 없거나 가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 ➔ 해바라기센터와 전담 의료기관(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을 통해 응급치료와 증거채취 가능
-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 ➔ 인공임신중절 지원: 사례회의 후 결정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 ➔ 성폭력피해자의 민·형사 및 가사사건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 ➔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 변호사협회의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

※ 국선변호사 요구, 적극적 조력활동, 피해자 결정권 보장 중요

○ 이주여성보호시설 연계 및 생계 지원 등

- ➔ 이주여성보호시설 입소 연계 및 긴급 생계비, 자녀 학자금 지원
- ➔ 범죄 피해 보조금 신청(장애 또는 중상해)
- ➔ 아동 피해자 등 주소지 외 지역의 취학 및 전·입학 가능
- ➔ 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 법무부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 ➔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이주여성에게는 1345 콜센터를 통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서비스를 연계

➔ 인권·고충 상담관과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간 핫라인을 개설하여 법적 지원

○ 예술흥행(E-6) 종사자에 대한 사업장 점검·계도 강화 및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활용한 피해자 식별 및 피해자 회복 지원

3. 요양보호사 대상 지원 기관



1 요양보호사 대상 상담 및 신고 센터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544-7315, <http://www.dolbom.org/>

- ➔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를 위한 교육, 건강, 상담, 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사업
- ➔ 권역별로 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
- ➔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온라인 상담 가능.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
- ➔ 온라인 상담 주소 : http://www.dolbom.org/sub/sub05_01_02.php

4. 노인 대상 지원 기관



1 노인 대상 상담 및 신고 센터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제공,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 복지부 129

➔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학대 관련 신고상담은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5. 기타 참고용 자료

〈복지이슈 TODAY 2018년 11월호 : 사회복지 종사자와 감정노동〉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 해법은?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는 노환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지원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1:1 서비스다 보니 감정노동문제가 심각하다. 서비스 이용자나, 보호자가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해도 요양보호사가 혼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건 이후 권리 구제에 있어서도 취약한 실정이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 개인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자신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관과의 요양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를 권고사직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요양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하는 요양보호사는 침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법령상의 규제방식을 검토해보는다면, 현행법상의 조치의무에 따라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요구조치를 따를 수 있겠지만,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은 영세하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아 보험급액이 나오지 않는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주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많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장기요양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이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요청된 상담 중 하나는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6명의 요양보호사가 연이어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추행을 당했고, 해결되지 않은 성희롱 문제가 결국 후임 요양보호사에게도 지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상담 끝에 해당 이용자를 담당한 요양보호사가 구청에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취약계층이라는 점 등이 이유가 되어 요양서비스 수급권 제한은 어렵다고 했다. 해당 구청 담당 공무원이 성추행 가해자에게 훈계하는 정도로 문제는 축소되었다. 이렇게 장기요양업종 내 성희롱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참거나, 사사로이 끝나버리고 만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당사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요양보호사협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용자와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동을 3회 이상 한다면 일정 부분 수급권을 제한하는 삼진아웃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는 쉽게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인격권과 서비스 이용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보험공단은 등급심사 이후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보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대책은 미비하다.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개별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에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성희롱 및 인권침해에 신고 및 사후대응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책기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났고, 이제 요양보호사의 눈물을 닦아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출처 : 이근정.(2018).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 해법은?" 『복지이슈 TODAY: 사회복지 종사자와 감정노동』, 서울시복지재단 Vol.68

<경향신문> “무단 가출자는 쉽게 검거될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용 교재 맞나요?

이아름 기획자 areumlee@kyunghyang.com · 배동미 기자 bdm@kyunghyang.com

성 역할
고정관념 강화하는
이주여성용
한국어 교재

“오늘은 생리를 하는 날이에요.” “국제전화 너무 비싸니 전화 많이 안 하겠어요.”

벵골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담긴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의 필수 회화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이 한국어 교재의 시리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과 함께 부록으로 한국 생활에 필요한 상식도 담았다고 소개합니다.

‘한국 생활 중 아내가 알아야 할 점’이라는 제목의 부록에는 “무단가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은 경찰청 범인 검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무단가출자는 쉽게 검거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끝나고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때 필요하면 본인의 수입으로 친정을 도울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매우 이상하지 않나요?

또 “한국 남편은 이런 아내를 좋아한다”라는 항목에서는 “다정하게 말하고 애교 있게 행동하는 아내” “검소한 아내” “부모 및 자녀를 잘 부양하는 아내”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출판사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내용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고 부록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담은 교재가 문제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10년 국립국어원이 펴낸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는 “그들은 더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아내이면서 어머니이고 동시에 며느리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발간사와 함께 “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 나는 음식을 잘 못 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 “남편이 술 마신 다음 날 무슨 국을 끓여 줘요?” 등의 예문으로 이주여성을 가사노동에만 한정된 존재로 표현했다

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된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

같은 해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부부 공동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에도 “술은 한국 사회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문화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남편의 태도가 장소에 따라 다른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 남자들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일러두기’ 부분에는 ‘남편이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한국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부장적 모습과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는 최근 문제가 된 한국어 교재의 내용이 “우리가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선과 관련이 있다”며 이주여성 현장을 “한국사회의 성 불평등한 모습이 내재되어 집합적으로 표출되는 곳”이라 말합니다.

반복되는 이주여성 한국어 교재 논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igtpBRI3OIg>

출처: 경향신문(2019.09.10.), “무단 가출자는 쉽게 검거될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용 교재 맞나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01559001&code=940100#csidx3d1d1c-06774de3cb746e2e644a1eedc

**<국민일보> 70대 노인이 호프집 화장실에 몰카⁵⁶ 설치
용산 전자상가에서 몰카 구입해 설치방법까지 배워**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70대 노인이 호프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여성들을 훑쳐보다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목포시 도심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7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쯤부터 이달 14일까지 목포 시내 한 호프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프집 여주인⁵⁷이 1층 화장실 창문 틈으로 내려와 있는 대나무 끝쪽에 연결된 차량 리모콘 형태의 물체를 수상히 여겨 뜯어본 뒤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용산의 한 전자상가를 찾아 몰래카메라를 구입했으며, 설치방법까지 자세히 배운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 국민일보(2019.08.16.), 70대 노인이 호프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 용산 전자상가에서 몰카 구입해 설치방법까지 배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09824&code=61121211&cp=nv>

<추천도서 및 논문>

대상	형식	제목	저자 / 출판사 / 출판년도
이주민	도서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 폭력 피해 여성들의 생존 분투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오월의봄(2018)
이주민	도서	이주여성 본격 서울살이 가이드 - 그래! 이제는 성평등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서울특별시(2018)
요양보호사	논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폭력경험과 대처행동	박경옥, 한국교통대학교(2016)
노인	도서	늙음에 미치다 - 창조적 노인으로서 사는 법	이호선, 북코리아(2019)
노인	도서	그 섬, 파고다 -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아시아 경제신문 특별취재팀, 황금사자(2014)

- 56) 불법촬영/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표현해야 함.
- 57) 호프집 업주의 성별만 명시한 언론보도 그대로 가져옴.

6. 참고 자료

- 변신원 외.(2017). 「폭력예방 기본교재1: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미발행).
- 여성가족부.(2016), “2016 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2017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 및 젠더(여성)폭력예방교육 통합기본과정」. p.7
- CEDAW.(2017).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o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 김양희.(2013).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WHO(2013.6.20.). Violence against women: a 'global health problem of epidemic proportions' https://www.who.int/mediacentre/news/releases/2013/violence_against_women_20130620/en/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2017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 및 젠더(여성)폭력예방교육 통합기본과정」.
- 헤럴드경제(2018.03.27.), 데이트폭력, 높은 재범률... 한 달에 7명 사망하는 끔찍한 현실.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3271054574080784_1
- 법무부.(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고용노동부.(2019). 「알기 쉬운 고용허가제 안내서」.
- 허오영숙.(2017).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상황”. 「2017 총북지역인권포럼 '총북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자료집」.
- 법무부 보도자료(2018.03.21.), 이주여성의 '외출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8).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여성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료집.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이주여성 성폭력 대응 가이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8.03.26.),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8.06.20.),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연장 기한 평균 22.8개월.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16).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 한겨레신문(2019.07.07.),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가정폭력... 반복되는 피해 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797.html#csidx8f7a-583363c31168034936ea760e137
- 오마이뉴스(2019.08.04.), 돈 주고 아내 사세요?... 이주여성 '물건' 취급하는 광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0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여성신문(2017.10.11.), [여성운동 30년, 용기와 연대의 기록] ④ 이주여성,우리의 이웃이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26>

- 오마이뉴스(2018.03.20.), 성폭행 당하는데 망보던 사돈... 이주여성들의 #미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3059
- 국민일보(2019.08.31.),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시켜줄게” 속여 브라질여성들 성매매시킨 일당 구속.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61216&code=61121111&cp=nv>
- 뉴스1(2019.07.25.), 삼척 전복사고 이후 사라진 태국 노동자들, 조속히 의료기관 찾아야.
<http://news1.kr/articles/?3678813>
- 한겨레신문(2019.05.13.),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 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616.html#csidxb358ca408d-7078a8ce64a5a75c61908>
- 한겨레신문(2018.05.15.), “앞지 말고 뛰어다녀” CCTV는 요양사도 따라다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918.html#csidx9413d7c8e0a9e-2a954790e804f61243>
- 이호용, 이성기, 최성경, 손영화.(2014).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겨레신문(2019.05.22.), 어르신 돌보러 방문요양 왔는데... 발을 매라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822.html
- 국민일보(2019.06.07.), “만져달라” “옷 벗자” 성범죄에 떠는 여성 재가요양보호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426&code=11131100&cp=nv>
- 임춘식, 이인수.(2013). “요양보호사가 노인주거시설에서 경험한 성희롱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33』, 220-259
- 최성경.(2016).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특수성과 법정정책 과제”, 『법과 정책연구41』, 365-391
- 김양지영.(2009). “성희롱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 실태”. 『증가하는 돌봄 일자리, 은폐되는 성희롱: 돌봄 노동자 성희롱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 4-88.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도서 벽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활용 매뉴얼”.
- 주간경향(2018.12.17.), “[표지 이야기] 홀로 사는 노인여성도 범죄의 표적”,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인터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12101539081&pt=nv#csidx4d7696027b5c852992e1f6034f8dd74>
- 김연희.(2013).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 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189-216.
- 전진우.(2019). “콜라텍에 형성된 노인여가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 시사인(2019.08.12.), 농촌에서 발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는 누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64>
- 연합뉴스TV(2018.4.9.), 성폭력 피해자 60%, '아는 사람'에 당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aES7IFKKZk>
- 주간경향(2018.12.17.), [표지 이야기] 홀로 사는 노인여성도 범죄의 표적.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12101539081&pt=nv#csidx4d7696027b5c852992e1f6034f8dd74>

- 성경원.(2005).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노인의 성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 주간경향(2018.08.27.), [특집] 경제 이유로 노인 범죄 늘어난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808201443321&code=115>
- 농민신문(2019.05.22.), 딸 같아서 그랬다? 성범죄입니다!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11726/view>
- 여성신문(2015.10.01.), 5년간 노인 대상 성범죄 76% 급증... 여성 노인 “성폭력 두려워요”.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99>
- 여성신문 (2013.12.30.), 여성노인 성폭력: 할머니는 성폭행당하지 않는다고?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87>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7). 「새로운 양성평등교육매뉴얼」. 24쪽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top.or.kr/>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https://www.women1366.kr>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이제는 알아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례 20」. 여성가족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7). 「이주민을 위한 성인권 가이드라인」.
- 이근정.(2018).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 해법은?” 『복지이슈 TODAY: 사회복지 종사자와 감정노동』. 서울시복지재단 Vol.68
- 경향신문 (2019.09.10.), “무단 가출자는 쉽게 검거될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용 교재 맞나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01559001&code=940100#csidx3d1d1c06774de3cb746e2e644a1eedc
- 국민일보(2019.08.16.), 70대 노인이 호프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 용산 전자상가에서 몰카 구입해 설치방법까지 배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09824&code=61121211&cp=nv>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기획
매뉴얼

이주민, 요양보호사, 노인

수탁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발 정미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신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Tel. 02-2100-6000(代)

제작 지디에스케이

©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기획 매뉴얼」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기획 매뉴얼

이주민 요양보호사 노인

